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2024. 1.



공시심사실



목 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2. 투자위험요소의 정의

2-1 정의	1
2-2 대분류	1
2-3 범위	2

3. 세부 투자위험요소 기재 시 일반원칙

3-1 세부 투자위험요소의 추출	2
3-2 주제문 표시	2
3-3 세부 투자위험요소별 문단 구성	4
3-4 이해하기 쉬운 공시	6
3-5 객관적·합리적인 공시	7
3-6 예측정보의 기재 요령	8

4. 핵심투자위험

4-1 핵심투자위험의 정의	10
4-2 핵심투자위험 기재원칙	12
4-3 필수 기재사항	13

5. 사업위험요소 예시

5-1 시장환경 변화	14
5-2 매출·매입 편중	15
5-3 자원개발사업	16
5-4 연구개발	17
5-5 제약·바이오 사업	18
5-6 메타버스 사업	18
5-7 신규 사업	18
5-8 기존 사업 축소	20

5-9 특례상장기업	20
5-10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위험	20
5-11 외국회사 위험	21

6. 회사위험요소 예시

6-1 재무상태 악화	23
6-2 지배구조 변경	28
6-3 계열회사 위험	29
6-4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험	29
6-5 내부통제의 취약점	30
6-6 우발채무 등	31
6-7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33
6-8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체결에 관한 사항	34
6-9 유동성 위험이 우려되는 기업	34
6-10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위험	39
6-11 투자계약증권의 운영자위험	40

7. 기타 투자위험요소 예시

7-1 주가 희석화	42
7-2 수급 불균형	42
7-3 잔액인수 시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3
7-4 주가 급변	44
7-5 상장폐지 등	44
7-6 신주 발행 관련 법적 분쟁	44
7-7 신종자본증권의 위험	45
7-8 조건부자본증권의 위험	46
7-9 증권예탁증권의 위험	46
7-10 투자계약증권의 위험	47

(참고) 주요 공시 모범기준

1. 유전(가스) 개발 사업	49
2. 제약·바이오 기업	65
3. 메타버스 사업	77

이 안내서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중 「**요약 정보, 1. 핵심투자위험**」 및 「**제1부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지만, 모든 사항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인은 실제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할 때에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물론 인수인·증권분석기관·신용평가회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까지 모두 감안하여 그 기재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이 안내서는 증권신고서의 핵심사항인 ‘투자위험요소’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시되도록 그 기재요령을 제시함으로써 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발행인은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이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투자위험요소의 정의

2-1 (정의) ‘투자위험요소(risk factors)’란 투자자가 모집·매출되는 증권을 취득함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가격 하락, 원리금 회수 지연·불능 등)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말한다.

2-1-1. ‘투자위험’이란 발행인이 부실화되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가능성을 말한다.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 위험요소로 기재한다.

2-2 (대분류) 투자위험요소는 크게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2-1. ‘사업위험’이란 발행인이 속한 산업이나 업종 또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행인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2-2-2. ‘회사위험’이란 사업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재무상태, 지배구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7조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 미체결에 관한 사항 등 발행인의 특수한 위험을 말한다.

2-2-3. '기타 투자위험'이란 사업위험 또는 회사위험 외의 위험으로, 증권의 발행조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2-3 (범위) 투자위험요소는 발행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발행인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3-1.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한 배당수익 등이 가장 큰 수익원이고 자회사의 영업 및 산업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요한 자회사들을 기준으로 그들이 속한 산업이나 업종 또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지주회사의 사업 위험으로 기재한다. 또한 발행인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자회사 지분이나 지분법평가손익은 물론 자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중요한 우발채무로 인해 발행인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도 지주회사의 회사 위험으로 기재한다.

3**세부 투자위험요소 기재 시 일반원칙**

3-1 (세부 투자위험요소의 추출) 발행인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할 때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 각각에 대하여 세부 투자위험요소들을 추출하여 기재한다.

투자위험요소의 대분류 및 세부 투자위험요소

대분류	1. 사업위험	2. 회사위험	3. 기타 투자위험
세부 투자위험요소	가. 나. 다. ...	가. 나. 다. ...	가. 나. 다. ...

- 3-1-1. 발행인은 세부 투자위험요소를 추출할 때 발행인과 증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집·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위험하게 하는 요인과 상황, 발행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위험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발행인에 불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3-1-2. ‘중요한 위험요소’란 모집·매출되는 증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갖는 위험요소를 말한다.
- 3-1-3. 발행인은 위험요소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참작할 수 있다.
- 3-1-4. 누구에게나 또는 모든 모집·매출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요소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경제동향 등 발행인이 직접 통제할 수 없고 발행인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위험요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기재한다.
- 3-2 (주제문 표시)** 발행인은 세부 투자위험요소별로 각 위험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주제문을 작성하여 글상자 안에 기재한다.
- 3-2-1. ‘주제문(topic sentence)’이란 발행인이 세부 투자위험요소에 관하여 전달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main idea)을 나타낸 문장을 말하며, 주제문에는 당해 위험요소의 발생 원인과 발행인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 3-2-2. 발행인은 세부 투자위험요소마다 하나씩 주제문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도록 글 상자 안에 굵고 두드러진 활자체로 기재한다.

【주제문 예시】

1. 사업위험

라. 전기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로 인해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세부 투자위험요소별 문단 구성) 발행인은 주제문 아래에서 당해 투자위험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발행인은 당해 위험요소의 내용을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정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제문을 담고 있는 ‘주지(主旨) 문단’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3-3-1. ‘문단(paragraph)’이란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는 여러 문장의 집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문단에 있는 모든 문장은 그 문단의 중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문단은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3-3-2. 발행인은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도입 문단, 전제 문단, 주지 문단, 보충 문단, 종결 문단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a) ‘도입(導入) 문단’은 글의 맨 처음에 나오는 문단으로 글의 목적과 방향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 (b) ‘전제(前提) 문단’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근거나 배경을 밝혀 주는 문단을 말한다.
- (c) ‘주지(主旨) 문단’은 글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는 핵심 문단을 말한다.
- (d) ‘보충(補充) 문단’은 앞 문단의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거나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문단을 말한다.
- (e) ‘종결(終結) 문단’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전망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문단을 말한다.

3-3-3. 주지 문단은 주제문이 앞에 나오고 그 주제문의 근거가 되는 뒷받침 문장이 뒤에 배치되는 방식, 즉 ‘두괄식’으로 구성한다.

3-3-4. ‘뒷받침 문장(supporting sentence)’이란 주제문을 부연해서 설명하거나 주제문에서 전달·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문장을 말한다.

3-3-5. 발행인은 주지 문단에서 투자자들이 주제문의 중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 문장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단은 완결성을 갖추게 된다.

【투자위험요소별 문단 구성 예시】

1. 사업위험

하. 향후 당사의 사업 규모가 커지고 외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외주처의 납기 미준수 및 품질 저하 이슈가 발생하거나 기타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납기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유동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종합건설사로서 공사 진행 시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외주를 통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주처를 활용할 경우 당사는 적은 인원으로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 현장 관리 등의 핵심 영역에만 집중하여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외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기 지연 또는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시공 및 완공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는 해당 건설 현장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건설을 위해 필요한 주요 기자재(터빈, 블레이드, 타워, 태양광 모듈 등) 및 시공을 위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주요 기자재 매입처 및 각 협력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숙련된 인력 및 경영진에 의해 공사 현장을 관리하나 하도급 업체가 적시에 정해진 수준의 공사를 완료하거나 기자재 업체가 적시에 요청한 수준의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완공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참고로 당사와 외주업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외주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적시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자체상금을 자체일수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능력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건설 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에 의해 인도 일정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계약의무 수행 능력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중 태풍 또는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한 공사 지연, 전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최근 COVID-19 팬데믹에 따라 글로벌 이동의 제약이 발생하여 기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기자재 공급을 늦게 받음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당사의 영업실적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발주처와 체결한 수주 계약별로 명시하는 조건에 따라 유예기간 여부는 다르며,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완성된 건축물을 인도하는 경우 자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공사 진행과정에서 정해진 마일스톤(Milestone)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공사대금 청구가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사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공사관리팀은 공사 진행 전 입찰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외주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사팀은 공사 진행 시 현장의 공정과 품질을 전담 관리하여 납기 지연 및 품질 저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사업 규모가 커지고 외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외주처의 납기 미준수 및 품질 저하 이슈가 발생하거나 기타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납기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유동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4 (이해하기 쉬운 공시) 발행인은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투자자 등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사용한다.

- 3-4-1. ‘이해하기 쉬운 공시’란 발행인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 정보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기재하여 투자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기 위해 복잡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 3-4-2. 발행인은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을 주어와 서술어 및 종결어미까지 갖춘 완전한 서술식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이는 개조식 문장의 경우 요점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작위적으로 글을 짧게 만들면서 글이 번잡해지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非文)이 되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 3-4-3.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 법적·기술적 전문용어 및 계약서·협약서 등에 나오는 계약전문용어는 가능한 한 일상용어로 풀어서 사용한다. 그러나 전문용어 등을 일상용어로 대체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그 용어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 경우 그 용어의 정의는 본문의 문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괄호 안에 부연 설명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 3-4-4. 외래어는 한글로 표시하며, 고유명사이거나 한글만을 표시하면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서 쓴다. 이 경우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4-5. 추상적·일반적 용어보다는 구체적·개별적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생산이 증가했다’보다 ‘생산이 20% 증가했다’가 더 낫고, ‘발병했다’보다 ‘독감에 걸렸다’가 더 구체적이다.
- 3-5 (객관적·합리적인 공시) 발행인은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인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 3-5-1.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발표된 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표 후 2년이 지난 자료를 불가피하게 인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시점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인용된 자료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부연 설명한다.
- 3-5-2.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이나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된 근거가 증권신고서의 본문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발행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된 근거자료는 증권신고서의 본문 중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 3-6 (예측정보의 기재 요령)** 발행인은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3-6-1. ‘예측정보’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말한다.
- (a) 매출규모 ·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 (b) 자본금규모 ·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 (c)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 (d) 위 (a)부터 (c)까지의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해 평가한 사항

3-6-2. 발행인은 아래 방법에 따라 예측정보를 기재하거나 표시한다.

- (a)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 (b)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 (c)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3-6-3. 발행인은 예측·추정·전망·계획에 관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주장하거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핵심투자위험

4-1 (핵심투자위험의 정의) ‘핵심투자위험’이란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본문의 투자위험 중에서 발행인과 공모예정 증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손실의 정도 × 발생가능성)가 큰 것만을 간추려 증권신고서 요약 정보에 기재한 투자위험을 말한다.

《증권신고서 중 핵심투자위험과 투자위험요소 간의 관계 예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가능한 한 4쪽 이내로 압축하여 기재)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아래 ‘ 주제문 1-가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나. 아래 ‘ 주제문 1-나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다. 아래 ‘ 주제문 1-마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
회사위험	가. 아래 ‘ 주제문 2-가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나. 아래 ‘ 주제문 2-나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다. 아래 ‘ 주제문 2-라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라. 아래 ‘ 주제문 2-사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마. 아래 ‘ 주제문 2-자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
기타 투자위험	가. 아래 ‘ 주제문 3-가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나. 아래 ‘ 주제문 3-나 ’ 기재. 필요 시 뒷받침 문장 기재 …



(중요도가 큰 투자위험요소를 간추려 기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주제문 1-가**’ 기재 →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가.

위 ‘주제문 1-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나. ‘**주제문 1-나**’ 기재 →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나.

위 ‘주제문 1-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다. ‘**주제문 1-다**’ 기재

위 ‘주제문 1-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라. ‘**주제문 1-라**’ 기재

위 ‘주제문 1-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마. ‘**주제문 1-마**’ 기재

→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다.

위 '주제문 1-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바. '주제문 1-바' 기재

위 '주제문 1-바'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

2. 회사위험

가. '주제문 2-가' 기재 → 핵심투자위험, 회사위험 가.

위 '주제문 2-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나. '주제문 2-나' 기재 → 핵심투자위험, 회사위험 나.

위 '주제문 2-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다. '주제문 2-다' 기재

위 '주제문 2-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라. '주제문 2-라' 기재 → 핵심투자위험, 회사위험 다.

위 '주제문 2-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마. '주제문 2-마' 기재

위 '주제문 2-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바. '주제문 2-바' 기재

위 '주제문 2-바'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사. '주제문 2-사' 기재 → 핵심투자위험, 회사위험 사.

위 '주제문 2-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아. '주제문 2-아' 기재

위 '주제문 2-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자. '주제문 2-자' 기재 → 핵심투자위험, 회사위험 자.

위 '주제문 2-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

3. 기타 투자위험

가. '주제문 3-가' 기재 → 핵심투자위험, 기타 투자위험 가.

위 '주제문 3-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나. '주제문 3-나' 기재 → 핵심투자위험, 기타 투자위험 나.

위 '주제문 3-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다. '주제문 3-다' 기재

위 '주제문 3-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라. '주제문 3-라' 기재

위 '주제문 3-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단들(주지 문단 포함)

...

4-2 (핵심투자위험 기재원칙)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본문의 세부 투자위험 요소들 중에서 발행인과 공모예정 증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손실의 정도 × 발생가능성)가 큰 위험요소들을 선별하여, 당해 투자 위험요소별 주제문(topic sentence)을 핵심투자위험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투자자가 각 주제문의 중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 문장(supporting sentence)을 추가하여 구체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 4-2-1. 발행인은 핵심투자위험을 선별하기 위하여 세부 투자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손실규모(즉, 손실의 정도) 및 당해 투자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즉, 발생가능성)을 추정할 때,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의견과 인수인·증권분석기관·신용평가회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4-2-2.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요약정보에 핵심투자위험을 가능한 한 4쪽 이내로 압축하여 기재한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은 아래와 같이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표시한다.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선별·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II. 투자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4-2-3. 핵심투자위험에 관한 문장 중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부적격 신용 등급, 부도위험, 차입금 상환 불이행 위험, 주가 하락, 매출·수익성·성장성·재무상황 악화, 영업환경에 부정적 영향 등 투자자의 투자 일반글자보다 2 포인트(point, 글자 크기의 단위) 이상 크고 굵게 표시한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구를

4-2-4. 「자본시장법」 제122조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정정한 핵심투자 위험요소는 밑줄을 그어 굵은 활자체로 표시한다.

4-3 (필수 기재사항) 발행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관련 위험이나 현금흐름 관련 유동성 위험 등 발행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투자 위험요소는 반드시 핵심투자위험으로 기재한다.

4-3-1. 발행인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7조에 따라 주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체결에 관한 사항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채무계열의 계열명, 주기업체, 주채권은행, 약정미체결로 인한 재무위험 및 자금조달위험 등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핵심투자위험으로 기재한다.

4-3-2.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만기, 이자지급, 조기상환, 원리금 감면 등에 관한 발행인 및 투자자의 권리,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핵심투자위험으로 기재한다.

4-3-3.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전환·상각 사유와 그에 따른 주식 전환·상각의 내용, 주식전환·상각 사유 발생 시 투자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식전환·상각이 발생한다는 사실, 주식전환·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전환·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핵심투자위험으로 기재한다.

5 사업위험요소 예시

5-1 (시장환경 변화)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시장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기존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징과 경쟁력, 매출 유지·확대 방안 등을 기재한다.

5-1-1. 발행인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규제가 신설되거나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관련 규제 및 정책의 내용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한다.

5-1-2. 발행인의 사업과 관련한 시장구조(독과점 시장 등), 법적 진입장벽 및 경제적 진입장벽(규모의 경제, 기술력 등)이 변함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거나 발행인의 경쟁적 지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a) 시장구조 또는 진입장벽의 변화와 관련된 진행상황·일정
- (b) 경쟁의 격화 또는 경쟁력의 약화가 발행인의 영업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판매추세 둔화 또는 판매단가 하락 가능성 등

5-1-3. 발행인의 산업 또는 주력제품과 관련된 기술이 급변하여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a)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의 특징. 예를 들면 짧은 제품수명주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지출,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매출 감소 등이 있다.
- (b) 산업 및 제품의 수명주기와 그 수명주기상 현재 위치
- (c) 발행인이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 및 그 계획의 실패 위험

5-1-4. 발행인은 기술개발이나 영업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략적 제휴 관계(기술이용계약을 포함한다)를 맺은 회사 등과 그 관계를 종료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나 영업상의 충격, 제휴 관계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기밀이나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 등을 기술한다.

5-1-5. 발행인의 과거 영업 성과가 미래수익을 예측하는데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예컨대 시장이 초기 형성단계에 있는 경우, 관련 산업의 업력이 짧은 경우,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고 이에 따른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을 기술한다.

5-2 (매출 · 매입 편중) 매출 · 매입이 특정 제품 · 거래처 등에 편중되어 있고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행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품 · 거래처별 편중도, 영업환경 변화의 내용 및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기재한다.

5-2-1. 발행인의 매출처가 소수의 고객에 편중되어 있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급변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여기서 '소수의 고객에 편중'이라 함은 1인 고객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면 발행인의 전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예: 10% 이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a) 매출처가 거대기업이거나 그 수가 적어서 수요자의 교섭력이 우월한 수요자 중심 산업인지 여부
- (b) 제품 등의 가격이 발행인의 수익성과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등 발행인의 가격결정권이 약화하였는지 여부
- (c) 발행인의 경영계획이 수요자의 경영전략이나 영업실적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발행인이 독자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거나 수급을 조절하기 곤란한지 여부
- (d) 매출처와의 거래관계가 악화할 가능성
- (e)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발행인의 제품 및 기술을 배타적으로 공급 해야 하는 등 발행인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받고 있는지 여부
- (f) 매출처의 최근 3사업연도 영업실적 추이

5-2-2. 주요 매출처가 속한 국가의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높은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및 당해 신용평가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5-2-3. 발행인이 원자재나 부품 등을 소수의 공급자에 의존하고 있어 매입·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액 급변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여기서 '소수의 공급자에 의존'이라 함은 해당 원자재나 부품이 독과점적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이들 공급선을 바꾸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선의 차질이 빚어지면 발행인의 전체 매출액이 크게 감소(예: 30% 이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a) 핵심부품 등의 자원 조달이 곤란하거나 납기 지연, 원가율 상승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b) 원재료 및 핵심부품 관련 후방산업의 기술수준 및 성장속도에 따라 발행인의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c)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매출 지역이나 매출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2-4. 발행인이 생산부문이나 관리부문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외주업체에 의존할 경우에는 그 외주 의존 분야를 기술하고, 외주에 따른 제품 및 용역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해 기술한다.

- (a) 외주생산업체의 품질관리 미숙 및 납기 지연
- (b) 외주업체의 노사분규, 부도 등에 따른 수급 차질

5-3 (자원개발사업) 유전 등의 탐사·개발 사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자원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 등 세부 사항을 기재하고,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한다.

- 5-3-1. 발행인은 투자자가 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전 매장량 평가 관련 자료 등을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한다.

* '08.1월 최초 배포 후 '10.3월 일부 개정, 본 안내서 후단 참고

- 5-3-2. 발행인은 유전개발사업별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 제4편(유전개발사업의 공시내용)에 따라 유전개발사업 추진현황, 유전개발대상지역의 사업 추진현황, 유전개발사업 추진관련 위험요인 및 회계처리 현황 등을 기재한다.

- 5-4 (연구개발)** 발행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의 연구개발 과정,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항의 진행경과, 연구개발부문의 조직형태 및 운영현황 등을 기재한다.

- 5-4-1. 과거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요 기술 및 제품이 상품화될 가능성이 낮거나 개발비를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술한다.

- 5-4-2.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그 보조금이 연구개발의 중요한 인센티브였던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중단가능성을 기재하고, 그 보조금의 지급이 실제로 중단된다면 발행인이 당해 연구를 지속할지 여부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a) 발행인이 당해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
- (b) 발행인이 당해 연구를 중단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상각금액

- 5-4-3.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용 제한이나 수익공유약정 등 중요한 특약이 있어 발행인의 영업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특약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업상의 제약내용을 기재한다.

5-4-4. 소수의 핵심인력이 발행인의 주요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핵심인력의 구성 및 의존도, 핵심인력의 확보·유지방안 또는 핵심인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기재한다. 여기서 '핵심인력' 이란 발행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으로서, 대체 가능성이 낮고 현 사업에의 기여도나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임직원을 말한다.

5-5 (제약·바이오 사업) 발행인은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모범사례^{*}」에 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개발 관련 특유의 위험 요인을 정리하여 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18.8월 최초 배포 후 '21.1월 일부 개정, 본 안내서 후단 참고

5-5-1.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 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 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등을 기재한다.

5-5-2.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및 낮은 수취 확률, 라이센스 아웃 (License-out)의 경우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Upfront payment) 비율 및 계약상대기업 등을 기재한다.

5-5-3.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우 출시시점의 중요성, 신규진입 기업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및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을 기재한다.

5-6 (메타버스 사업) 발행인은 「메타버스 사업 공시 모범사례^{*}」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위험요인을 정리하여 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22.11월 최초 배포, 본 안내서 후단 참고

5-7 (신규 사업) 발행인이 새로 진출하는 사업이 향후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신규 사업의 전략적 목표, 동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기재한다. 신규 사업에는 발행인이 직접 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회사 또는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진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5-7-1. 발행인이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 자본력, 인력, 경험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경쟁력 열위 요소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다.
- 5-7-2. 신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의 조달방법, 자금이 조달되지 못할 경우 대응방안, 그 사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 자금의 회수방안 등을 포함한 자금조달 관련 위험을 기재한다.
- 5-7-3. 자회사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기재하고 향후 동 신규 사업을 위해 발행인이 추가로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
- 5-7-4. 계열사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배경과 의사결정과정, 출자가액 평가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5-7-5.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한 신규 사업 진출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도한 자와 발행인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거래상대방의 선정 방법, 거래가격의 산정 근거,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다.
- 5-7-6. 사업양수를 통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한 경우에는 양수가액, 양수 사업부문의 양수 전후 손익과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동 사업양수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기술한다.
- 5-7-7. 발행인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새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위험은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당해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향후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 5-7-8.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기재한다.
- 5-7-9.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해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추진사업의 진행 경과, 그 사업의 자연 경위, 향후 예상 손익과 관련 위험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 5-8 (기존 사업 축소)** 발행인이 기존 사업을 최근 축소하였거나 향후 축소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는 발행인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및 조직 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사업의 축소 배경, 영업 또는 자산의 매각 관련 계약 내용, 사업 축소 이후 수익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위험과 대응계획을 기재한다.
- 5-9 (특례상장기업)** 한국거래소 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를 적용받아 주권을 상장한 벤처기업 및 기술성장기업은 매출 규모, 이익창출력 등이 미미한 경우가 많고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제품의 이익실현 주기가 짧은 편이므로 연구개발위험, 제품수명주기 단축위험, 지적재산권의 침해위험 등의 사업위험과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5-10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위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3-2조에 따라 공동사업위험을 기재한다.
- 5-10-1. 공동사업위험은 투자계약의 목적물인 공동사업에 대한 위험요소로서 사업위험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a) 영위하려는 공동사업이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소송·분쟁이 제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법규 위배 또는 소송·분쟁 제기시 투자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기재한다.

※ (참고) 기초자산이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 기초자산 보관·관리, 처분 관련 의사결정구조 등이 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인지 여부를 법규 등을 근거로 설명하고, 공동사업 구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위험요소를 기재한다.

- (b)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운영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예:기초자산 처분과 관련한 반대), 공동사업 탈퇴(예:기초자산 보관·관리 및 처분 관련 위임계약 취소, 기초자산 분할청구) 등 발생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기재한다.
- (c) 상기 사항 이외에 공동사업구조가 변경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기재한다.
- (d) 공동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증권 발행을 통한 유사 공동사업 사례) 존재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사례에서 나타난 위험 등을 기술한다.

5-11 (외국회사 위험) 발행인이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3-4조에 따라 발행인의 설립지국 법규 및 정관상 회사 제도의 개요와 외국환거래 및 조세관련 제도의 개요를 기재한다.

5-11-1. 발행인의 설립지국 법규 및 정관상 회사제도의 개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우리나라의 해당 제도와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한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및 주요 자회사 각각에 관하여 이 사항을 기재한다.

- (a)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명칭
- (b) 설립지 회사법 · 도산법 · 증권거래법령 등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 (c) 이사회 · 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과 그 권한
- (d) 주주의 권리 · 의무
- (e) 외국인의 투자 제한 및 지배권 변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
- (f) 보유지분율 변동 시 공시의무
- (g) 주주총회 절차
- (h) 도산 · 파산 시 절차 · 권리구제 절차 등

- 5-11-2. 외국환거래 및 조세 관련 제도의 개요는 증권의 취득, 거래 및 배당금의 송금 등과 관련된 발행인 설립지국의 외국환거래 및 조세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기재한다.
- 5-11-3. 투자자가 증권 관련 법령상 민사책임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발행인, 임원, 신고서류에 기재된 인수인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나열된 자의 자산이 대한민국 밖에 위치하는 경우 동 민사책임과 관련된 배상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재한다. 본 항목을 변호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한다.

6 회사위험요소 예시

6-1 (재무상태 악화) 발행인의 영업실적이 나빠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배당금 및 원리금의 지불능력이 저하되고 증권의 가치도 떨어지므로, 발행인은 총체적 경영활동의 결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구조 및 재무용통성 등을 평가하여 재무상태의 악화로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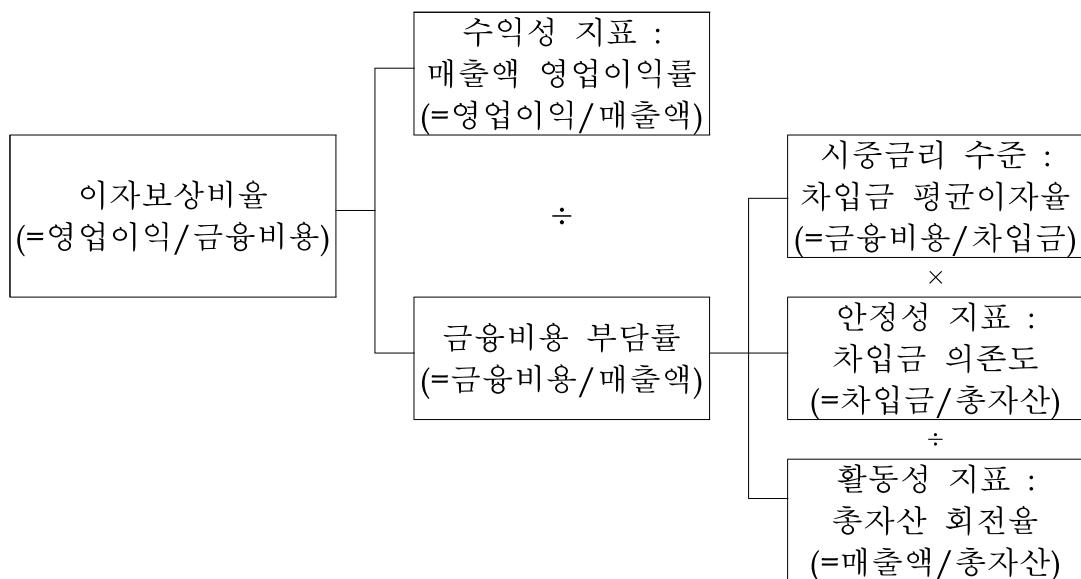
6-1-1. 발행인은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구조 및 재무용통성 등을 평가하여 재무상태의 악화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매출채권 회수정책의 문제점 및 장기 미회수채권의 회수 가능성
- (b) 재고자산 관리부실로 인한 제품생산 차질, 재고자산 증가에 따른 영업자금 부족, 재고자산 감액 등
- (c) 추가적인 연구개발비 소요 가능성 및 개발실패에 따른 감액손실
- (d) 영업권 발생원인과 영업권의 감액 가능성
- (e) 유형자산, 특히 기계장치의 진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
- (f) 부(-)의 영업현금흐름이나 영업현금흐름을 초과하는 투자자금 지출 등에 따른 유동성 악화
- (g) 과다 차입에 따른 영업·투자 위축 및 채무상환불능 가능성
- (h) 매출 감소 추세인 경우 고정비 부담 확대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 되는 효과(영업레버리지 효과)

※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란 영업비용 중에서 고정비(fixed cost)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영업레버리지 효과'란 매출액의 증감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출되는 감가상각비나 급여 등의 고정비로 인해 매출액의 변동 폭보다 손익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비중이 큰 장치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 6-1-2. 발행인의 영업실적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지표인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경영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매출 급감의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다.
- 6-1-3. 영업현금흐름이 최근 2사업연도에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경우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재무정책을 약술하고 이러한 재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 6-1-4. 최근 사업연도의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 ÷ 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경우에는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는 금융비용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이자보상비율을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차입금 평균이자율(= 금융비용 ÷ 차입금),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 총자산) 및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 총자산)로 분해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이자보상비율의 분해도



6-1-5. 매출채권 회전율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거나 최근 2사업 연도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기술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 평균 대손 비율을 기재한다.

※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이 높으면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 회전율이 낮으면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져 대손발생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6-1-6. 재고자산 회전율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거나 최근 2사업 연도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기술한다.

※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액/재고자산 잔액)은 재고자산이 일정 기간에 몇 번이나 당좌자산(현금 또는 매출채권)으로 전환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아지면 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고 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6-1-7. 총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고자산 보유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 위험이 있으므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의 설정 내역과 진부화된 것으로 확인된 재고자산 내역을 기재하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한다.

※ ‘진부화(obsolescence)’란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의 감소가 없어도 경제적 또는 기능적 원인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킬 필요가 생긴 것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경우 유행에 뒤지거나, 낡은 연식(年式), 구식 모델 등의 원인으로 취득원가를 밑도는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하게 된다.

6-1-8. 발행인의 보유자산 중 채권 금액의 비중 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변동 현황 · 설정 방침, 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채권 잔액 현황 등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1-9. 타 회사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의 현금흐름 등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대여거래의 실재성, 대여상대방 및 당해 대여거래와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정보, 담보권의 가치 등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1-10. 발행인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권의 상세 내역, 예상 회수금액 및 회수방안, 예상 손실규모 등을 기재한다.

6-1-11. 거액의 유형자산 취득은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향후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 사유 및 관련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1-12. 개발비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성이 인정되므로 개발비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한 근거 및 회계처리기준 부합 여부를 기재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4)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6-1-13. 차입금이 급증하고 단기성 차입금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유동성(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부족하여 정해진 결제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차입금의 항목별·만기별 상환금액 도래현황, 항목별 자금조달 규모 및 조건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차입금의 항목은 금융기관차입금, 회사채(CB·BW 등 종류별로 구분한다) 등 차입금의 특성·내용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한다.
- 6-1-14. 발행인이 최근에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등급인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회사, 대상이 된 증권(기업어음,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및 당해 신용평가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 6-1-15. 환율 변동이 발행인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6-2-3조 제5항에 따라 공시대상기간(최근 3 사업연도)의 환율변동추이,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 및 발행인이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기재한다.
- 6-1-16. IPO 증권신고서에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재무실적이 “제2부 -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요약재무정보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월 매출액·영업손익(잠정치 포함)을 기재한다.
- ※ (참고1) 기재시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추후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악화 투자위험, 상장 전까지 회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화 및 실적 전망(구체적 수치기재 불필요)을 추가로 기재한다.
- (참고2) 최초 제출시 미기재한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해당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등 발생시 청약 전일까지 정정할 수 있음.
- (참고3) ‘참고2’에 따른 기재내용 보완(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며, 보완 기재한 내용의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 (참고4) 동 사항은 투자자 가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요약정보 - 핵심투자 위험”에도 간단·명료하게 핵심 내용을 기재한다.

6-2 (지배구조 변경)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기업의 투자 및 경영 행태, 전략적 의사결정, 경영성과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와 기업의 운영주체인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투자 여부 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6-2-1. 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 중에 위임장 경쟁, 공개매수, 소송 등 경영권 경쟁을 위해 당사자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이 공시 등으로 외부에 알려진 경우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제7-3-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a) 경영권 경쟁의 당사자
- (b) 진행경과 및 종료된 경우 그 결과. 진행경과는 경영권 경쟁이 일어난 시기, 경쟁의 주요 수단(의결권 주식 매입, 위임장 권유, 기타 방법), 법정 분쟁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c) 경영권 경쟁기간 중 경영권 경쟁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 내용. 발행인이 취한 조치는 정관 변경, 증권 발행, 특정 자산의 취득, 공개매수나 합병 등의 제안 등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말한다.

6-2-2. 경영진이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경영 안정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영진의 변경 과정, 변경 사유 및 향후 발행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2-3.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충분히 높지 않아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따라 경영권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동 가능성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2-4.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영권 변경에 따른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 변경 사유 및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2-5.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즉 매매의 예약, 주식의 담보 제공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 또는 일정조건의 성취 등으로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3 (계열회사 위험) 발행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계열 주력회사를 중심으로 계열회사 간에 상호의존성이 커서 결과적으로 신용위험을 강하게 공유하는 경우 부실계열회사의 재무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6-3-1. 거액의 자금을 출자한 계열회사가 단기간에 부실화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결정 사유와 경위, 계열회사와의 자본거래 및 실질적인 자금 회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3-2. 계열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계열회사 출자지분의 손상차손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부실화된 사유와 향후 추가자금 부담 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3-3. 부실 계열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우발채무 등으로 발행인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계열회사의 사업 내용 및 발행인의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4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험) 이해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에 따른 부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행인 및 주주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6-4-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의 규모가 중요한 경우 투자자들이 그 거래의 공정성, 합리성 및 신용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등의 내용, 내부통제절차 및 의사결정방법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0-1-1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VIII.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기재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고, 동 거래 관련 위험이 발행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이란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가지급, 대여(증권의 대여를 포함한다), 담보제공, 보증, 배서,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6-4-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횡령·배임, 부적정한 이자 지급, 채무의 과대 계상, 채권의 미회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금거래 경위 및 내부통제절차, 차입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회손실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한다.

6-4-3.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거래가 「상법」 등에서 금지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횡령·배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없는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기재 한다. 이 경우 동 거래가 「상법」 등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 근거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횡령·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상장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6-5 (내부통제의 취약점) 발행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오류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발행인의 대응 조치를 기재한다.

- 6-5-1. 횡령 · 배임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 등의 내역, 횡령 금액의 회수대책 및 회수가능성, 발행인의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을 기재한다.
- 6-5-2. 발행인의 최대주주, 임원 또는 중요한 직원이 최근 5년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피소 · 제재 경위, 진행 상황 등)과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이 경우 '임원 또는 중요한 직원'이란 이사, 감사,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발행인의 재무 · 회계 · 기획 · 연구개발 · 공시업무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원에 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말한다.
- 6-5-3. 발행인이 상장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 협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조치내용을 기재한다.
- 6-5-4.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공시대상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그 외의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발행인의 대응조치를 기재한다.
- 6-5-5. 정기보고서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내용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발행인의 재무 결산 프로세스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용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기재한다.
- 6-6 (우발채무 등)**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 6-6-1.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 중 이거나 동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본안소송과 가처분·가압류신청 등 본안전소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발행인 또는 자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발행인 또는 자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발행인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1조에 따라 증권 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기재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발행인의 영업·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기재할 수 있다.
- 6-6-2.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계속 중인 채무보증계약, 채무인수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정한 우발부채·우발자산 및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우발 부채 중에서 금액 및 사안 등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제11-2-3조 제2항, 제11-2-4조 제2항 및 제11-2-5조에 따라 증권 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기재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고, 동 계약 등과 관련된 위험이 발행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재 할 수 있다.
- 6-6-3.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향후 예상 할 수 있는 가장 불리한 상황(환율 급락, 금리 급등 등)을 가정하여 그 상황 하에서 발생하게 될 최대손실액이 발행인의 자산 및 손익에 비추어 중요한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액과 그 가정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 6-6-4. 발행인이 자금 차입 또는 채무증권 발행 등과 관련하여 사채관리 계약 등의 약정상 재무비율 유지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의 주요 내용과 그 약정 불이행이 발행인에 미칠 주요 영향, 예컨대 기한의 이익 상실, 배상책임 등을 기재한다.
- 6-6-5. 상환청구권이 있는 우선주는 그 실질이 차입금과 유사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에 현금 유출이 예상되므로 상환자금 마련 방법 등 발행인의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6-6-6. 발행인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대한 클레임 (Claim)이 제기된 경우, 발행인의 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금액의 보상이 요구된 경우, 또는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중요한 분쟁이 제기된 경우에는 발행인의 현재 및 장래 영업활동에 이들 사건들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재하고 향후 유사한 클레임(Claim) · 보상 · 배상요구 등이 제기될 가능성을 기술한다.

6-7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계속기업의 가정은 발행인의 경영활동의 기본 전제인바, 지속적인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위험이 높아지므로 관련 위험 및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 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6-7-1. 관리종목지정기업은 영업실적 ·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의문시되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간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투자위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 위험, 상장 폐지 위험 등에 대한 공시에 중점을 두어 기재한다.

6-8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체결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이내 주채무 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사실이 있고, 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약정체결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3-1조 작성지침 i.나. 및 제2-6-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a) 계열명 및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 주채권은행
- (b) 재무구조개선약정 약정체결 기한
- (c) 약정 미체결 사유 및 그로 인한 재무위험 및 자금조달 위험 등

6-8-1.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 계열 및 주기업체를 말한다.

6-8-2. 「주채권은행」이란 같은 규정 제80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6-8-3. 「재무구조개선약정」이란 같은 규정 제82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 제52조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말한다.

6-9 (유동성 위험이 우려되는 기업) 유동성 위험은 발행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투자위험요소이므로, 인수인·증권분석기관·신용평가 회사 등 외부전문가의 평가 결과 발행인의 유동성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발행인은 주요 재무사항(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현금흐름 등), 장·단기차입금 현황, 향후 1년간 자금수지(cash-flow) 계획 및 자금보충 등의 잠재적 채무현황을 총괄표 등을 이용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 최근 판례는 증권신고서상 심각한 재무상태 기재누락을 이유로 주관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 8. 30.)에서는 “악화된 재무상태에 관하여 추상적인 분석과 막연한 회복가능성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중요사항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6-9-1. 「유동성 위험 우려 기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 대규모 공모자금을 빈번하게 조달
- (b)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이 A- 이하이고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negative)인 경우

- (c) 금융기관 차입금 대비 공모자금 조달금액이 과도한 경우
- (d)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주력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장기불황업종인 경우

6-9-2. 발행인은 주요 재무사항(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현금흐름 등) 요약을 작성할 때 아래 양식을 참조한다.

'주요 재무사항 요약' 작성 양식 예시

(단위: 백만원)

구 분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각 분기실적>		당기(D) (누적)	(D-1)기	(D-2)기	(D-3)기
1분기	2분기					
결산연월(또는 결산기간)	1.1~3.31	4.1~6.30	1.1~6.30	20XX.12	20XX.12	20XX.12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및 주석사항 여부)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없는 경우 기업어음 신용등급)						
1. 자산 총액						
- 유동자산 총액						
2. 부채 총액						
- 유동부채 총액						
3. 순자산 총액						
4. 부채비율(%)						
5. 유동비율(%)						
6. 매출액						
7. 영업이익 또는 손실						
8. 이자보상비율(배)						
9. 당기순이익						
10. 자본금						
11. 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현금흐름/총부채비율(%)						
12. 투자활동 현금흐름						
13. 재무활동 현금흐름						
14.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기말 잔고						
15.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금액						

6-9-3. 발행인은 장·단기차입금 현황을 작성할 때 아래 양식을 참조한다.

‘장·단기차입금 현황’ 작성 양식 예시

(단위: 백만원)

구 분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2년 3분기(누적)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부채 총계				
총 차입금				
유동성차입금 ¹⁾				
-단기차입금				
-단기사채				
-유동성사채				
-유동성장기차입금				
비유동성차입금 ¹⁾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장기차입금				
순차입금				
차입금의존도				
순차입금의존도				

주 : 1)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유동성차입금, 만기가 1년을 초과할 경우 비유동성 차입금으로 분류

2) 순차입금 = 총 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채비율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자산 총계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 총계

6-9-4. 발행인은 향후 1년간 자금수지(cash-flow) 계획을 작성할 때 아래 양식을 참조한다.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 작성 양식 예시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	'22년 3분기
영업 현금흐름	(a) 수입	매출대금			
		기타			
		계			
	(b) 지출	원재료 구입/ 외주가공비			
		급여			
		판매관리비			
		경상연구비			
		기타			
		계			
	영업수지(= (a) - (b))				
투자 현금흐름	(c) 수입	자산매각			
		기타			
		계			
	(d) 지출	연구개발투자			
		해외법인 투자			
		기타			
		계			
	투자수지(= (c) - (d))				
재무 현금흐름	(e) 수입	유상증자			
		기타			
		계			
	(f) 지출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CB · BW 상환			
		기타			
		계			
	재무수지(= (e) - (f))				
	기초 자금				
	기말 자금				

6-9-5. 발행인은 자금보충 등의 잠재적 채무현황을 작성할 때 아래 양식을 참조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자금보충 등의 잠재적 채무현황’에 관한 세부내역은 증권신고서 중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기재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자금보충 등의 잠재적 채무현황’ 작성 양식 예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분기	2022년 1분기	2021년 말	2020년 말	2019년 말
종속기업* 지급보증					
종속기업* 자금보충					
계열회사 자금보충					
PF 자금보충 등					
기 타					
합 계					

* 종속기업: 지분율 50% 이상인 계열회사 등

※ ‘자금보충약정’은 자회사나 계열회사가 금융회사의 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동 약정을 제공한 회사가 자금을 대신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채무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약정을 말한다. 자금보충약정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회사가 직접 금융회사에 돈을 갚는 채무보증방식과 형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효과가 있다.

6-10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3-5조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갖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위험요소를 기재한다.

- (a) 집합투자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
- (b) 상장실패위험
- (c) 합병실패위험
- (d) 상장폐지위험
- (e)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 및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취득한 자의 주식매수 청구권 · 의결권 등 각종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
- (f) 공모 후 차입 · 채권발행 ·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재무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
- (g)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위험
- (h)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 신탁한 금전(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의 주주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
- (i) 합병 외의 사업목적이 없어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배당이 어려울 수 있는 위험
- (j) 경영진과 기업인수목적회사 간에 이해상충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위험
- (k) 예치자금등을 반환할 경우 발행 시 주당 발행가격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위험 등

6-11 (투자계약증권의 운영자위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3-2조에 따라 공동사업자위험을 기재한다.

6-11-1. 공동사업자위험은 공동사업자와 관련된 위험요소로서 회사위험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 기재한다.

- (a)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투자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 또는 투자 구조를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공동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험성을 기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 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이 공동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기재한다.
- (b) 공동사업이 투자계약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가 미흡한 경우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기재한다.
- (c)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선정기준, 선정경위 등을 기재하고 부적합한 공동사업자 선정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공동사업자 교체 가능성여부 등을 기재한다.
- (d)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분쟁,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사업대상 자산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공동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그로 인한 위험요소 등을 기재한다.
- (e) 공동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6-11-2.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해상충 위험요소로서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다.

- (a)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의 매입, 가치평가(내부평가 및 외부 감정평가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매각, 청산 등 공동사업 운영 제반 과정에 있어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 (b) 공동사업자는 상기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의 공정성,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내용,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기재한다.

6-11-3.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청약금 분리 예치방법, 청약·배정·납입 방식 등 계좌 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좌 서비스 기관의 정보, 계약관계상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청약절차와 관련 청약증거금 여부, 예치금 보관방식, 균등·비례배정 방법, 납입방법, 청약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6-11-4.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수료 관련 위험 요소로서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다

- (a) 증권신고서상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공동사업자(공동사업 참여자 포함)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수수료 항목별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b) 공동사업 청산 시의 수수료(기초자산 매각수수료 및 성과보수 등을 포함하는 손익정산)와 관련, 공동사업 운영자가 얻는 수익과 투자자가 얻는 수익의 금액과 조건을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c) 발행인이 공동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초자산 매입 후 투자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발행인이 즉시 얻는 이익)을 명확히 기재한다.

7 기타 투자위험요소 예시

7-1 (주가 회석화) 발행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발행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 행사 시 유통주식 수의 증가 및 신주의 저가 발행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7-1-1. 아직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이 향후 행사된다면 새로 발행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이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직 행사되지 아니한 물량과 행사가능시기, 행사가격과 함께 당해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기재한다.

7-2 (수급 불균형) 보호 예수된 주식의 수가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기재하고, 보호 예수기간이 종료하여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물량이 시장에 출회된다면 향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재한다.

7-2-1. 발행인의 주권이 향후 신규 상장될 예정이고 벤처금융, 외국투자자 등의 보유 물량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예수의무가 없으며 그 보유 물량의 비중이 중요한 경우에는 당해 벤처금융, 외국투자자 등이 투자수익 실현을 위해 대량 매도한다면 시장수급의 일시적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7-2-2.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 수를 차감한 유통주식 수의 대부분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발행인과 자본제휴관계에 있는 자 등이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수가 적은 경우 이들 주주의 보유비중과 이로 인한 매매부진 가능성을 기재한다.

7-3 (잔액 인수 시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주권상장법인인 발행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제1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와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실권수수료를 포함한다), 당해 투자매매업자의 실권주 매각 가능 시기, 실권주 인수가 향후 발행인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등을 기재한다.

7-3-1. 예컨대 발행인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 일반공모를 거쳐 신주를 배정한 후에도 청약되지 아니한 잔여주식이 발생하면 이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로 하여금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도록 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서 실권수수료의 명목으로 그 실권주 인수금액에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조기에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그 실권주를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행인의 주가가 단기간 내에 하락할 수 있다. 더욱이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실권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기 때문에 그 실권주의 실질적인 매입단가가 주주 및 일반 청약자들에 대한 발행가액보다 소정의 비율만큼 낮아지는 셈이므로, 대표주관회사 등이 추후 발행인의 실권주를 매도할 때에는 그 매도 단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 등이 실권주를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주식은 잠재매각물량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발행인은 실권주 인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실권수수료를 포함한다), 대표주관회사 등이 실권주를 매각할 수 있는 시기, 대표주관회사 등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향후 발행인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등을 기재한다.

7-4 (주가 급변) 발행인의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면 향후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등을 통해 공시된 주가 급등의 사유 및 향후 주가 급락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5 (상장폐지 등) 발행인이 관리종목지정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관리종목지정 · 상장폐지 사유 및 그 사유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기재한다.

7-6 (신주 발행 관련 법적 분쟁) 신주 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증자 추진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가 발행되지 못할 가능성 등 관련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7 (신종자본증권의 위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과 만기, 이자지급, 조기상환 등에 관한 발행인 및 투자자의 권리와 상세하게 기재하고,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 등을 추가로 기재한다.

- (a)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 발행의 필요성
- (b) 자본인정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
- (c) 자본인정에 관한 회계법인(감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제외)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
- (d) 신용평가회사가 발행인의 회계처리와는 다르게 당해 채무증권의 자본성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예컨대 Moody's사의 경우 만기의 영구성, 이자지급 연기조건, 손실완충능력 등을 감안하여 5단계로 자본성을 구분(100%, 75%, 50%, 25%, 0% 자본 인정)
- (e) 사후적으로 회계감사 및 감리과정에서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무적인 효과 및 대응방안. 예컨대 유럽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즉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회사도 있다.
- (f) 발행인이 임의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원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예컨대 법적형태는 채무증권이지만 일반 회사채와는 다르게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만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어 단기 투자 또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재한다.
- (g) 발행인이 임의로 또는 특정 조건 해당 시 이자지급을 정지하면 투자자가 이자를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 이 경우 이자지급 정지 옵션의 조건을 세분화하여 각 조건의 내용과 정지 기간을 기재하고, 각 지급정지 조건에 따른 미지급 이자가 향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이자지급 정지에 따른 발행인의 권리 제한 내용(이자지급 정지 기간 동안 보통주 배당 정지 등)을 기재한다.
- (h) 발행인이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조기 상환일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경우 조기 상환 조건 및 기간, 금리 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 (i) 발행인이 파산, 청산절차 진행 등을 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일반채권을 모두 변제한 후에야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7-8 (조건부자본증권의 위험)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a)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재조정(이하 '주식전환·상각'이라 한다)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주식전환·상각의 내용
- (b) 주식전환·상각 사유 발생 시 투자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식 전환·상각이 발생한다는 사실
- (c) 주식전환·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이 경우 자본(보통주, 기본자본, 보완자본 등)·자산(대기업·중소기업·가계별 대출채권, 주식, 채권 등)의 구성현황과 관련 지표(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대손상각 등)의 최근 3년간 추이를 이용하여 기술한다.
- (d) 전환·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경우 위 (c)의 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재한다. 예컨대 당기순손실금액 등이 얼마 증가하면 BIS 비율이 1%p 하락하는지 또는 5.125%에 도달하는지 등을 기술한다.

7-9 (증권예탁증권의 위험)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제2-3-3조에 따라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의 권리행사, 증권예탁증권의 인출과 재예탁 및 본국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위험 요소 등을 기재한다.

- 7-9-1. 증권예탁증권 보유자가 예탁된 증권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에 비해 특정 권리, 예컨대 소수주주권 등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소요기간 및 관련 위험성을 기재한다.
- 7-9-2. 증권예탁증권을 예탁된 증권으로 인출하거나 증권을 증권예탁증권으로 재예탁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와 제한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인출하거나 재예탁할 때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한다.
- 7-9-3.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투자가치가 예탁된 증권이 상장된 본국시장 및 증권예탁증권이 상장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고, 각국 시장의

유동성, 거래제도 및 거래투명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7-10 (투자계약증권의 위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3-2조에 따라 환금성위험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7-10-1. 투자계약증권의 전매가 제한되거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을 기타 위험에 추가로 기재한다.

7-10-2. 공동사업의 기초자산과 관련된 위험요소로서 기타위험에 추가로 기재한다.

(a) 기초자산의 개별 특성 및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전반을 설명한다.

※ (작성예시)

- (기초자산의 개별 특성) 미술가 및 미술품에 대한 설명, 해당 미술가 및 해당 미술품에 대한 경매 및 거래 내역 등 공급/수요에 관한 정보 등
- (기초자산 거래시장 특성) 전반적인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 시장 유동성 증가/감소에 미칠수 있는 요인, 과거 거래 데이터의 신뢰가능 정도, 시장의 깊이 및 수요층 등에 관한 정보 등

(b) 기초자산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다.

(c) 기초자산 특성에 따른 내재위험을 기재한다.

※ (예시) 미술품 투자 : 위작·작품손상·분실·도난 등

한우 투자 : 전염병 등 감염·농장이탈·개체식별번호 위조·변조 등

(d) 기초자산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의 처분곤란 등으로 투자계약증권의 만기가 연장될 수 있는 위험을 기재한다.

주 요 공 시 모 범 기 준

1 유전(가스) 개발 사업(2010.3월 개정)

제1편 목적

이 모범기준은 유전(가스)개발사업(이하 “유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공시방법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상장법인 등의 공시업무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공시개요

2.1 일반원칙

- (1) 공시의무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이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공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 및 이 지침에서 특정 형태의 도표나 그림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거나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당해 도표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기재하거나 별도의 그래프, 도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3)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에 근거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단정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피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용어 등을 삼가는 등 이용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4) 이 기준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에 있어 각 조 또는 작성지침에서 기재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 깊은 항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5) 이 기준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기업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료를 확보하되 공시서류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에서 확보하도록 요구한 자료 중 거래상대방의 경영상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2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2) 이 기준 제4편(유전개발사업의 공시내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a)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의 경우에는 유전개발사업별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상 투자하는 경우
 - (b)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유전개발 사업별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상 투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해당 공시내용과 분량에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만을 발췌·요약하여 기재하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한다.
 - 회사의 유전개발사업 추진내역 개요(사업단계 및 사업성숙도 포함)
 - 회사의 유전개발사업 기 투자자금, 향후 소요자금 및 조달방안
 - 유전개발사업 대상지역의 개요 및 추진단계
 - 유전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확인매장량 및 해당국 정부 등에 보고된 확인·추정·가능매장량
 - 유전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내역 개요
 - (c) 법 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상기 (a) 및 (b)조문에 따라 유전개발사업을 공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소에 자율·공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에는 제출일 현재 기 공시된 사항의 진행현황을 기재한다.
- 기 공시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매장량 등에 중요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

2.3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 (1) 이사회는 유전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은 유전개발사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상장기업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이사회와 경영진은 유전개발사업의 매장량/생산리스크, 법적리스크 등 계량화하기 힘든 리스크를 포함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편 유전개발사업의 용어정의

3.1. 용어사용의 기본원칙

- (1) 신고서 등에 사용한 유전개발관련 전문용어는 적절한 용어정의를 기재하여야 하며, 용어정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개정 지경부고시 제 2009-315호) (이하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이라한다)를 기초로 하되 원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2)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원유자원의 인식체계 및 유전개발관련 전문용어는 “해외자원개발자금의 융자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 등은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 및 세계석유협회(World Petroleum Council)등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사용하는 용어의 해설*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석유 매장량/자원의 정의에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Glossary of Terms Used in Petroleum Reserves/Resources,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ing/World Petroleum Congress) 참조

3.2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1. 매장량 관련 용어

- (1) “매장량(Reserves)”이라 함은 확인된 탄화수소 집적구조에서 개발 사업(프로젝트)에 의해 특정 시점의 상업적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자원량이다(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시추에 의해 “발견”되었고,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하고, 시장 환경 및 사업 측면에서 “상업적”이며, 사업 개시 시점에서 “생산되지 않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석유의 양을 말한다.

- 가. “확인매장량(Proved Reserves)”이라 함은 지질학적 및 공학적 자료의 평가 결과, 현재의 경제적 조건, 운영방법, 국가의 법체계하에서 상업적으로 회수가능할 것이 합리적으로 확실시 되는 평가량이다.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평가량의 높은 신뢰수준을 뒷받침할 합리적 확실성이 있으며,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실제 회수량이 평가량과 같거나 더 높을 확률이 적어도 9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나. “추정매장량(Probable Reserves)”이라 함은 지질학적 및 공학적 자료의 평가 결과, 회수가능성이 확인매장량보다는 낮으나, 가능매장량보다는 높은 추가 평가량이다. 확률론적 방법으로는 실제 회수량이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가능매장량(Possible Reserves)”이라 함은 지질학적 및 공학적 자료의 평가 결과, 회수가능성이 추정매장량보다 낮은 추가 평가량이다. 확률론적 방법으로는 실제 회수량이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인 확인매장량, 추정매장량, 가능매장량의 합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2)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이라 함은 특정시점에서 시추를 통해 확인된 탄화수소 집적구조로부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평가되나 적용된 사업이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해 상업적 개발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는 석유의 양(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 (3)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이라 함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탄화수소 집적 구조로부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의 양을 말한다.
- (4) “발견(Discovered)”이라 함은 실제 시추작업을 통해 지표로 분출된 석유 또는 표본 추출을 통해 유동 석유의 존재가 확인됨을 의미한다.
- (5) “개발(Developed)”이라 함은 개발계획 하에서 유정(well)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와 향후 자본투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모두 갖추어진 이후이거나 또는 개발생산을 위한 추가 비용이 신규 유정을 시추하는 비용보다 작은 규모에서 이루어질 때를 말한다. 필요한 유정과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장량은 ‘미개발(Undeveloped)’ 범주로 평가된다.
- (6) “개발매장량(Developed Reserves)”이라 함은 기존의 유정 및 시설로부터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을 말한다.

가. 개발생산매장량(Developed Producing Reserves)

- 평가시점에서 개공(open) 상태이며 생산 중인 완결구간에서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을 말한다.

나. 개발미생산매장량(Developed Non-Producing Reserves)

- 평가시점에서 폐정(shut-in)이나 완결 또는 재완결이 필요한 유정에서 (Behind-pipe) 향후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을 말한다.

(7) “미개발매장량(Undeveloped Reserves)”이라 함은 기존 유정 및 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시추 및 시설을 통해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을 말한다.

(8) “상업적(Commercial)”이라 함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발되어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상업성의 보편적 판단기준 및 그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 기준”상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을 따른다.

3.2.2. 유전개발사업 관련 용어

(1) “유전개발”이라 함은 국내 · 외에서 아래의 방법 등에 따라 유전을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유 · 가스의 수송 · 정제 · 마아케팅, 부산물로 얻어지는 석유자원 생산 등은 제외한다.

- 유전을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유전을 개발하는 방법
- 유전을 개발하는 자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방법
- 유전을 개발하는 자에게 개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여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방법

(2)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석유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사작업을 포함)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석유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가. 개발승인(Approved for development)

- 개발에 필요한 모든 승인이 이루어졌고 자본금이 명확하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나. 개발타당(Justified for development)

- 평가보고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된 상업 조건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필요한 모든 승인/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보고 시점은 향후 가격, 비용 등에 대한 가정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고에 근거를 둠).

- (4)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 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한다.
- (5)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 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 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 (6) “기술용역제공사업”, “개발자금융자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등 기타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的 규정을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4편 유전개발사업의 공시내용

4.1. 회사의 유전개발사업 추진 현황

- (1) 회사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과거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 참여 경위를 기재한다.
 - 사업운영 체계 및 유전개발관련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회사가 직접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기재
- (2) 유전개발사업 관련 계약의 형태 및 구조를 투자자가 알기 쉽게 그림 또는 도표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주요 계약내용을 기술한다.
 - 수익배분 구조도를 기재
 - 광권계약, 생산분배계약, 서비스계약 등 계약의 세부형태를 기재
 - 계약상대방의 주요현황, 계약기간, 공동참여자 및 지분내역을 기재
 - 보증각서 또는 은행보증서, 의무이행 보증서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보장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

* 자료를 확보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공시서류에는 기재하거나 첨부하지 아니하며 사후 검증을 위하여 회사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함(이하 같음)

(3) 유전개발 사업의 착공, 완공 및 운영 등과 관련한 해당국 정부의 승인, 인허가 취득 여부 및 기타 의무부담사항을 기재한다.

(4) 회사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과거 투자금액 현황 및 향후 투자하게 될 자금의 조달 계획을 기재한다.

- 기간별 과거 투자금액 및 향후 투자예정금액(매입비, 탐사비, 개발비, 운영비, 기타로 구분 기재)을 기재
- 과거의 자금조달 내역 및 향후 조달계획을 기재

(5) 회사의 유전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성 평가내역을 투자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한다.

- 수익구조 및 투자금액 회수시점(기간)을 기재
-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예상 재무제표 추정자료를 확보
- 생산량 및 판매량, 유가전망 등에 대한 분석내용을 확보
- 자본비용,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의무작업량, 로얄티, 세제 등 세부적인 비용지출 분석자료를 확보

(6) 회사의 유전개발사업 추진 사업(회사)의 주식, 지분, 수익권 등을 취득하여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 지분, 권리 등의 가치평가 내역을 기재한다.

- 주식, 지분, 수익권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해당 평가방법을 채택한 이유를 기재
- 주식 등에 대한 가치평가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확보
-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을 적용하는 경우 현금흐름가정에 대한 주요 추정 근거 및 내역을 확보
- 비교가치를 통하여 가치를 평가한 경우 비교대상 주식 등의 상장 및 거래현황과 시장 가치 산출내역을 확보

(7) 회사는 해당 유전개발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의견의 개요를 기재한다.

- 평가기관의 신인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현황 및 해당 평가기관이 과거에 평가한 사례에 대한 분석자료를 확보

(8) 회사는 해당 유전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원 및 매장량 등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신고한 내역을 기재한다.

(9) 회사는 본 기준 제4편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본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투자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기준 일부를 생략·요약·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4.2. 유전개발 대상지역의 사업 추진현황

(1) 회사는 유전개발사업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의 명칭, 면적, 위치, 지도를 상세하게 기재한다.

- 지질학적 지형과 원유의 매장 가능한 구조를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를 확보

(2) 대상지역의 매장자원에 대한 양을 기재하는 경우 매장량, 발견잠재자원량, 탐사자원량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매장량에 대해서는 확인매장량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참고사항으로 추정매장량 또는 가능매장량을 기재할 수 있다.

- 추정매장량과 가능매장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매장량과 확인매장량의 산정기준상 차이를 간략하게 기재
- 상세한 매장량 및 상업성 분석자료를 확보

(4) 대상지역의 유전개발사업 추진, 매장량 등과 관련하여 해당국 정부 등에 보고한 내역을 기재한다.

(5) 대상지역의 매장량과 관련하여 매장량을 추정한 기관의 현황 및 과거 평가내역의 개요를 기재한다.

- 매장량 평가기관의 신인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과거 평가내역 등 세부 증빙서류를 확보

(6) 회사는 대상지역 해당국에서 유전개발대상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여부 및 조건의 개요를 기재한다.

- 소재국의 사업승인신청 서류 및 승인문서를 확보

(7)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운영권을 확보한 자(이하 “운영자”)의 현황을 기재한다.

- 운영자의 주요 재무현황 및 주요 주주, 임직원 현황을 기재

(8) 운영자의 유전개발사업 관련 계약의 형태 및 구조를 투자자가 알기 쉽게 그림 또는 도표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주요 계약내용을 기술한다.

- 광권계약, 생산분배계약, 서비스계약 등 계약의 세부형태를 기재
- 주요 지분참여자 및 지분내역, 주요 지분참여자와의 계약기간을 기재
- 주요 지분참여자의 주요 재무현황 및 주요 주주, 임직원 현황을 확보
-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각서 또는 은행보증서, 의무이행 보증서 등의 보장내역을 확보
- 생산물 판매계약 및 수익의 배분 구조를 기재

(9) 대상지역 유전개발사업 운영자의 과거 유전개발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사업추진일정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한다.(5개년 이상)

- 기간별 과거 투자금액 및 향후 투자예정금액(매입비, 탐사비, 개발비, 운영비, 기타로 구분 기재)을 기재
- 과거의 자금조달 내역 및 향후 조달계획을 기재
- 회사가 분담하게 되는 금액 내역 및 비중을 기재
-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당해연도 실적을 확보
- 당해연도 사업계획(작업범위 및 내용, 당해연도 월별 수행일정)을 확보

(10) 대상지역 운영자가 과거 유사한 유전개발사업의 운영/유지에 대한 검증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기재한다.

- 과거 유전개발사업 운영경력을 기재하고 운영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 운영권자가 직접 개발사업 관련 시설의 관리·유지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별도의 관리·유지 계약자가 있는 경우 동 계약자의 현황을 확보
- 운영권자가 개발사업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의 확보내역을 확보

(11) 회사는 운영권자의 대상지역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내역을 기재한다.

- 수익구조 및 투자금액 회수시점(기간)을 기재
-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확보
-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예상 재무제표 추정자료를 확보
- 생산량 및 판매량, 유가전망 등에 대한 분석내용을 확보
- 자본비용,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의무작업량, 로얄티, 세제 등 세부적인 비용지출 분석자료를 확보
-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을 적용하는 경우 현금흐름가정에 대한 주요 추정 근거 및 내역을 확보
- 법적·환경적·사회적 요인, 정부의 규제변경, 정부와의 계약 내용 등 기타 제반 사업 환경에 대한 조사내역을 확보하고 경제성 평가시 고려한 내역을 확보

4.2.1. 대상지역의 개발사업 추진단계

(1) 회사는 용어정의 및 아래의 개발순서 구분을 참고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현재 유전개발 사업 추진단계를 ①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운영)권 확보 단계, ② 조사(탐사)사업단계, ③ 개발사업단계, ④ 생산사업단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유전개발순서 개요(한국석유공사) >

개발순서 구분		내용
조사(탐사) 단계	탄성파 탐사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컴퓨터 이용
	지질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자료해석	지질조사 자료 해석 및 시추 위치 확정
	시추선 및 용역계약	기자재 구입, 보급기지 설치
개발단계	시추	원유부존 여부 직접 확인
	유전평가	원유부존량 확인(10~20공), 경제성 평가
	생산시설 설치 및 굴착	플랫폼 건설, 생산정 굴착, 파이프라인 설치 (약 3년, 파이프라인 제외)
생산단계		원유 생산

(2) 유전개발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하여 사업성숙도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기재한다.

- 사업성숙도(생산중, 개발승인, 개발타당, 개발대기/개발미결, 개발보류, 개발불가/개발 난망 등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상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참고)를 구분하고 진행 단계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
- 개발계획, 계약, 승인/인가, 자본지출내역, 생산, 판매 등의 진행현황과 관련하여 사업 성숙도의 판단 근거 자료를 확보

(3) 각 추진단계별로 운영자의 해당국 정부 인허가 보유 내역, 예상되는 소요시간, 운영자의 사업추진 관련 주요 계약사항을 기재한다.

4.2.2. 대상지역의 탐사 및 개발현황

(1) 대상지역의 탐사 및 개발현황(4.2.2)은 유전개발순서에 따라 대상지역이 해당하는 사업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단계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자가 대상지역을 탐사/개발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재한다.

- 광구탐사 연혁 및 현황자료를 확보

(3) 분지개요 및 석유지질의 개요를 기재한다.

- 퇴적 환경, 분지의 발달사, 형태, 층서 분석자료를 확보

(4) 석유시스템(Petroleum System) 분석 및 석유포텐셜 평가의 개요를 기재한다.

- 근원암의 분포상황, 유기물 함량, 성숙도 등 분석자료를 확보
- 저류암의 구성, 공극률, 투수율 등 평가자료를 확보
- 덮개암, 트랩의 종류, 구조 등 트랩형성 분석자료를 확보
- 탄화수소의 생성 · 방출 · 이동 · 보존 등 석유시스템 모델링내역을 확보
- 석유시스템 모델링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분석내용을 확보
- 자원량 및 매장량을 기재하는 경우 계산 시 사용한 방법(결정론적 방식, 확률론적 방식 등), 계산내역, 상업성 평가내역의 개요를 기재
 - 결정론적 방식을 사용한 경우 유추계산법, 용적법, 물질수지법, 감퇴곡선법, 시뮬레이션법 등 분석자료를 확보
 - 확률론적 방식을 사용한 경우 면적, 두께, 공극율, 수포화도 등 입력변수에 대한 확률적분포 및 시뮬레이션 분석자료를 확보
 - 기타 방식을 사용한 경우 사용방식의 세부내역 및 계산내역을 확보
 - 상업성 평가와 관련한 세부 분석자료를 확보

(5) 대상지역에 대한 과거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내역 및 과거 탄성파 탐사 등 탐사실적 및 시추실적을 기재한다.

- 지표지질, 중자력 탐사, 물리탐사, 위성탐사 자료, 인접광구 기술자료를 확보

(6) 대상지역에 대한 과거 탄성파 탐사 등 탐사실적 및 시추실적을 기재한다.

- 탄성파 탐사 내역의 개요를 기재하고 탐사측선 및 위치도, 해석도면을 확보
- 탐사정 시추 지역 및 개수, 시추자, 시추결과, 산출시험에 따른 생산내역을 기재
- 시추보고서, 고생물, 지화학 및 저류암보고서를 확보
- SP검층, GR검층, 비저항검층, 공극율 검층 등 물리검층내역을 확보
- 반복지층시험기, 생산성시험 결과를 확보
- 유망구조 및 유망구조별 탐사자원량 산정내역을 확보
- 탐사 후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을 기재하는 경우 계산내역 및 상업성 분석자료를 확보

(7) 대상지역에 대한 향후 지질 및 물리 조사계획 및 탐사계획, 탐사정 시추계획을 기재한다.

- 향후 추가적인 조사 및 탐사비용 산정자료를 확보

(8) 대상지역에 대한 과거 평가정 시추실적, 향후 평가정 시추계획, 연도별 개발계획을 기재한다.

- 평가정 시추 지역 및 개수, 시추자, 시추결과, 산출시험에 따른 생산내역을 기재
- 시추시스템 및 생산시설 확보내역을 확보
- 평가정 시추후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을 기재하는 경우 계산내역 및 상업성 분석자료를 확보
- 기간별 시추계획 및 시추비용 산정자료를 확보

(9) 대상지역에 대한 생산정 시추 등 과거개발·생산실적 및 향후 개발·생산계획을 기재한다.

- 생산정 시추 지역 및 개수, 시추자, 시추결과를 기재
- 원유 생산, 운송, 출하시설 구축현황 및 계획을 확보
- 기간별 생산설비 설치계획 및 투자비 산정자료를 확보
- 기간별 생산량자료, 저류증시뮬레이션, 회수증진법(EOR)계획서를 확보

4.2.3. 생산된 원유의 판매방안

(1) 회사는 계획된 생산량에 대한 판매계획, 시장 존재여부,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유전개발사업이 조사(탐사)단계인 경우 생산된 원유의 판매방안(4.2.3)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상지역 생산량에 대한 운영자와 구매자간 인수도계약 또는 의무구매계약 등 사전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내용을 기재한다.

4.3. 유전개발사업 추진관련 위험(Risk)요인

(1) 회사는 유전개발사업에 대하여 매장량의 크기가 변동하거나 생산의 나이도가 증가하는 등의 매장량/생산 위험(Reserve/Production Risks)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기재한다.

(2) 회사는 개발시설의 적기완공, 예산준수, 시방사항과 공사 진행의 적정성 여부 등 건설관련 위험과 생산개시시점에서 완공이 지체되는 준공위험(Construction / Completion Risk)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기재한다.

(3) 회사는 생산시설이 설계대로 잘 운영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운영위험(Operating Risk)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기재한다.

(4) 회사는 생산원유를 흡수할 만한 충분한 시장의 존재와 판매가격의 변동성 등과 관련한 시장위험(Market Risk)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기재한다.

(5) 회사는 광구 운영권자와 각종의 계약 당사자가 각각의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당사자 위험(Counterpart Risk)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기재한다.

- (6) 회사는 투자대상국의 정치, 재무적 불안정성과 관련한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기재한다.
- (7) 회사는 회사 및 운영권자의 유전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 부족, 개발시간의 지연 등 기타 비계량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기재한다.

4.4. 회계처리 현황

- (1) 회사는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내역을 기재한다.
- (2) 회사는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적용한 주요한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 주요한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유를 기재한다.

제5편 유전개발사업의 평가

- (1) 회사는 개발사업 및 매장량의 평가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석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원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시 이 기준 제5편에 기재된 사항, 세계석유협회 등^{*}이 정한 석유자원 관리체계(Petroleum Resources Management System(2007), 석유 매장량 및 자원량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Petroleum Reserves and Resources)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 (SPE/WPC/AAPG/SPEE)

5.1. 매장량의 산정기준

5.1.1. 매장량의 산정기준

5.1.1.1. 확인매장량의 산정기준

- (1) 회사 등 유전개발자는 확인매장량의 산정을 위한 현재의 경제적 조건(Current economic condition)을 알기 위해서 매장량이 회수되는 기간 동안 정부의 관련 규제 현황, 회사의 운영상황, 개발계약의 효력존재 여부, 유가와 운영비의 공정한 산출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다.

- (2) 일반적으로 해당 저류층의 상업적 회수가능성이 실제 생산 또는 유증시험에 의해 검증되는 경우에 확인매장량으로 분류되며, 저류층의 생산성만으로는 확인매장량으로 분류될 수 없다. 또한 검증이나 코아분석으로 해당 저류층이 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지역 내의 저류층이 생산중이거나 유증시험에 의해 생산가능성이 입증된 경우에도 확인매장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 기존에 확립된 회수증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생산이 성공적인 경우와 회수증진법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에 확인매장량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회수증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류층에 대한 대표적인 시험생산으로부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에만 확인매장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5.1.1.2. 개발매장량의 산정기준

- (1) 개발매장량은 필요한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또는 설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될 비용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경우에 분류할 수 있다. 요구되는 설비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개발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개발된 매장량은 생산중인 또는 미생산중인 개발매장량으로 하위 분류 할 수 있다.
- (2) 미개발매장량은 아래로부터 미래투자를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이다.
- 알려진 퇴적지역 안의 미시추지역에 있는 새로운 유정
 - 다른(알려진) 저류층으로 기존 유정을 더 깊이 파들어 가는 것
 - 회수를 높이는 추가유정(Infill wells)
 - 주요한 또는 개량된 회수프로젝트를 위해 생산이나 수송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유정을 재건설하기 위해 상대적으로(새로운 유정을 시추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 큰 규모의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

5.1.1.3. 매장량의 상업성(commerciality) 평가기준

- (1) 매장량의 상업성을 주장하는 자는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견지하고 그러한 의사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계획표를 뒷받침하는 증거
 - 세부적인 투자 및 운영기준을 만족하는 개발계획의 미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
 -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산량의 기대매출(최소) 또는 모든 생산량에 대한 시장이 존재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 필요한 생산과 수송설비가 사용가능하거나 가능하여질 수 있다는 증거
 - 법적, 계약상의, 환경과 다른 사회·경제적 관련 사항이 평가되는 회수프로젝트의 실제 수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증거

- 현재의 허가기간(Duration of licence)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개발권자(the licence holder)가 현 허가권을 갱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갱신하여온 과거 역사적인 경력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전에는 매장량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음

5.1.2. 매장량의 단독 산정 및 합산기준

- (1) 단일구조에 대한 매장량은 확률론적 방식이 사용된 경우에는 평균값을 최적 값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정론적인 방식 특히 용적법에 의해 계산된 경우에는 확인매장량에 0.8~1.0, 추정매장량에 0.4~0.6, 가능매장량에 0~0.2의 계수를 곱하여 그 합을 최적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상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 표II-1 매장량의 세부분류표 참조)
- (2) 하나의 광구에 포함된 여러 유전의 매장량을 합산하거나,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매장량을 계산하는 경우, Level 단위간의 매장량 합산은 원칙적으로는 결정론적 또는 확률적인 방식에 따라 해당 저류층의 동일부류끼리 각각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평가자, Data의 양과 질, Field의 성숙도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계석유협회의 석유 매장량 및 자원량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Petroleum Reserves and Resources)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2. 유전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 (1) 개발사업의 경제성은 재무적 요인(생산(자본비용, 운영비용), 생산종료비용, 원가, 가격, 기간, 세금) 뿐 아니라, 마케팅, 법적, 환경적, 사회적, 정부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2) 개발사업의 평가는 역사적 원가법, 시장 비교가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3) 현금흐름기준 자원의 평가(Cash-flow-based resources evaluations)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한다.
 - 예정된 기간 동안 계획된 기대 생산량
 - 미래기간 동안에 적용이 기대되는 원가에 대한 평가자의 관점에서, 생산 인식 시점(Reference point)에 생산량을 개발, 회수, 생산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상 원가(환경, 사업포기, 교정원가를 포함)

- 미래기간 동안 각 상품에 적용이 예상되는 가격에 대한 평가자의 관점에서의 생산량 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회사에 부과되는 원가와 수익 부분을 포함)
- 미래의 계획된 생산 및 수익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및 로열티
- 권한과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한정된 프로젝트 수행 기간
- 평가시점에서 회사에 적용 가능한 가중평균 자본비용 또는 최소 필수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적절한 할인율의 적용

(4) 회사는 특정한 투자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최선의 예측 케이스가 회사의 기준할인율에 따라 양의 현재가치를 가지거나 최소한 양의 미할인 현금흐름을 가지는 경우 “경제적(economic)”으로 간주할 수 있다.

5.3. 외부평가

(1) 회사는 회사와 독립적인 유전개발관련 전문 감사인 또는 평가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회사는 이들 감사인이나 평가인이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전개발 관련 전문 감사인 또는 평가인은 자원의 매장량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분야에 대한 적정한 경험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사는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합병, 주식교환, 중요한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의 증권신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이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회사는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제약·바이오 기업(2021.1월 개정)

- 동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 동 모범사례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10조(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및 제4-2-11조(연구개발활동)**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중 **제약·바이오 기업이 특히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위주로 마련하였습니다.
- 동 모범사례는 공시 참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기재 범위 및 기재 내용은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투자자를 위해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1. 경영상의 주요계약

※ 계약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유의 특성 및 리스크 등을 반영한 정보를 기재
해당 계약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가.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	□□□	전세계 (한국 제외)	0000.00.0 0.	제품출시 후 00년 00월 00일	000	00	임상 2상
○○○	□□□	미국	0000.00.0 0.	0000.00.0 0.	000	00	임상 1상
○○○	□□□	중국	0000.00.0 0.	종료기간 없음	000	00	임상 3상
합계					0,000	000	

* 외화금액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환율로 환산

※ 상기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에 기재된 각각의 계약별로 상세내용을 기재

(1) 품목 : ○○○

① 계약상대방	□□□(프랑스) (※ 계약상대 회사명 및 소재국가를 기재)
② 계약내용	□□□은 ○○○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상업화 등을 진행
③ 대상지역	전세계(한국 제외) (※ 판권 판매지역을 기재)
④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0000.00.00 (계약변경일 : 0000.00.00) 계약종료일 : 제품 출시후 00년
⑤ 총 계약금액	000백만원(EUR 000), 로열티는 별도
⑥ 수취금액	<반환 의무 없는 금액> 계약금 (Upfront Payment) : 00백만원(EUR 000), 0000년 00월 수취 마일스톤(Milestone) : 000백만원(EUR 000), 0000년 00월 수취 <반환 의무 발생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또는 000백만원(EUR 000), 0000년 00월 수취]
⑦ 계약조건	계약금 (Upfront Payment) : 00백만원(EUR 00) - 수취조건: 계약 체결시 마일스톤(Milestone) : 000백만원(EUR 000) - 수취조건: 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 매출액의 0%/0년, 0%/0년 - 수취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 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에도 회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⑧ 회계처리방법	계약금 수취액 00백만원(EUR 000)은 00개월 동안 분할하여 수익 인식 마일스톤 수취액 000백만원(EUR 000)은 00개월 동안 분할하여 수익 인식 ※ 계약금, 마일스톤 등 수취금액에 대한 회사의 수익 인식 회계 처리방법을 기재
⑨ 대상기술	※ 라이센스아웃 계약을 체결한 품목과 관련된 기술의 주요내용을 기재
⑩ 개발 진행경과	<거래상대방> ※ 계약체결 시점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거래상대방의 지역별 및 임상 단계별 승인일, 임상 시작일, 임상 중단일 등을 기재 <회사> ※ 계약체결 시점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회사의 한국 등에서의 각 임상 단계별 승인일, 임상 시작일, 임상 중단일 등을 기재
⑪ 기타사항	※ 기타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

(2) 품목 : ○○○

...

(3) 품목 : ○○○

...

나.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지급금액*	진행단계
○○○	□□□	한국	0000.00.00.	제품출시 후 00년	000	00	임상 2상
○○○	□□□	전 세계	0000.00.00.	0000.00.00.	000	00	임상 1상
합계					0,000	000	

* 외화금액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환율로 환산

※ 상기 '라이센스인 계약 총괄표'에 기재된 각각의 계약별로 상세내용을 기재

(1) 품목 : ○○○

① 계약상대방	□□□(미국) (※ 계약상대 회사명 및 소재국가를 기재)
② 계약내용	□□□은 ○○○의 국내 임상시험에 필요한 물질과 기술 등을 제공하고, 국내 판매승인시 회사가 ○○○의 국내 판권을 보유
③ 대상지역	한국 (※ 판권 취득지역을 기재)
④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0000.00.00. 계약종료일 : 제품 출시후 00년
⑤ 총 계약금액	000백만원(USD 000), 로열티는 별도
⑥ 지급금액	<환수 불가능 금액> 계약금 (Upfront Payment) : 00백만원(USD 000), 0000년 00월 지급 마일스톤(Milestone) : 000백만원(USD 000), 0000년 00월 지급 <환수 가능 금액> 해당사항 없음 [또는 000백만원(USD 000), 0000년 00월 지급]
⑦ 계약조건	계약금 (Upfront Payment) : 00백만원(USD 00) - 지급조건: 계약 체결시 마일스톤(Milestone) : 000백만원(USD 000) - 지급조건: 각 임상단계 성공, 판매 승인, 적응증 추가 등 로열티(Royalty) : 매출액의 0%/0년, 0%/0년 - 지급조건: 매출 발생시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에도 □□□사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⑧ 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마일스톤 등 지급금액에 대한 회사의 비용인식 회계 처리방법을 기재 (예: 00개월 동안 분할하여 비용인식, 일시에 비용인식, 임상0상 이후의 마일스톤 지급액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등)
⑨ 대상기술	※ 라이센스인 계약을 체결한 품목과 관련된 기술의 주요내용을 기재

⑩ 개발 진행경과	<거래상대방> ※ 계약체결 시점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거래상대방의 지역별 및 임상 단계별 승인일, 임상 시작일, 임상 중단일 등을 기재 <회사> ※ 계약체결 시점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회사의 한국 등에서의 각 임상 단계별 승인일, 임상 시작일, 임상 중단일 등을 기재
	※ 기타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
⑪ 기타사항	※ 기타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

(2) 품목 : ○○○

...

다. 기술제휴계약

※ 중요 계약의 경우 총괄표상 상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이하 항목 동일

< 기술제휴계약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계약목적 조건 등 상세내용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계약금액	수수(지급) 방법	진행경과 등 비고
○○○	□□□		0000.00.00.	0000.00.00.	000		
○○○	□□□		0000.00.00.	0000.00.00.	000		

라. 판매계약

< 판매계약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계약목적 조건 등 상세내용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계약금액	수수(지급) 방법	진행경과 등 비고
○○○	□□□		0000.00.00.	0000.00.00.	000		
○○○	□□□		0000.00.00.	0000.00.00.	000		

마. 기타 ○○계약

< 기타 ○○계약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계약목적 조건 등 상세내용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계약금액	수수(지급) 방법	진행경과 등 비고
○○○	□□□		0000.00.00.	0000.00.00.	000		
○○○	□□□		0000.00.00.	0000.00.00.	000		

2.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 회사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재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소(▽▽소재) 산하 0개팀, □□연구소(▽▽소재) 산하 0개팀 등 총 0개 연구소, 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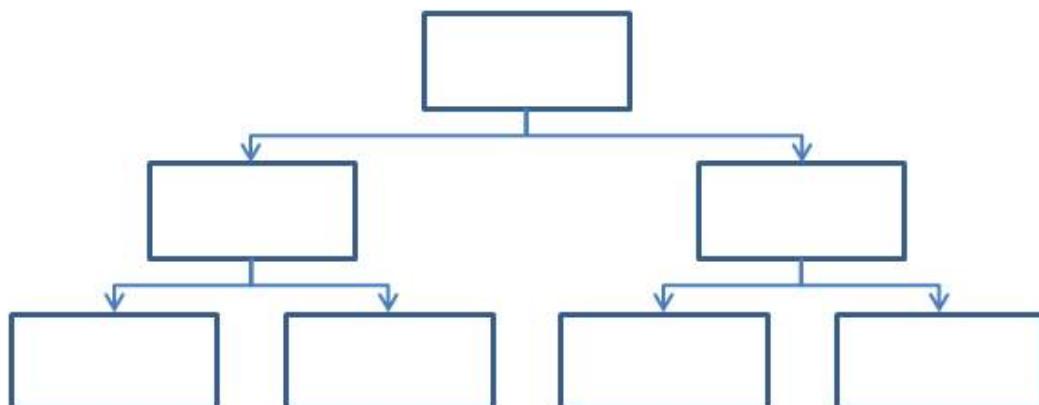
□□연구소는

※ 회사 연구개발 조직의 구성, 각 조직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기재

< 연구개발 조직 구성 >

연구소	팀	주요 업무
□□연구소	△△팀	연구소 총괄 및 연구과제 기획
	△△팀	○○○ 관련 연구
□□연구소	△△팀	○○○ 관련 연구
	△△팀	○○○ 관련 연구

< 조직도 >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00명, 석사급 00명 등 총 00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인력은 …

※ 회사 연구개발 인력의 구성,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기재

< 연구개발 인력 현황 >

(단위: 명)

구 分	인 원				합 계
	박 사	석 사	기 타		
□□연구소	△△팀	1	1	1	3
	△△팀	1	1	1	3
□□연구소	△△팀	1	1	1	3
	△△팀	1	1	1	3
합계		4	4	4	12

(3) 핵심 연구인력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연구소장인 ◇◇◇, 부연구소장인 ◇◇◇, ○○○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 등입니다.

연구소장인 ◇◇◇은 …

※ 핵심 연구인력들의 주요경력, 연구실적 등 연구개발 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 핵심 연구인력 현황 >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연구소장 (전무)	◇◇◇	연구총괄	○○대학교 ○○학 박사('00) ○○대학교 ○○학과 교수 ('00~'00)	[논문] ▽▽▽▽▽('00년, ▽▽학술지) [학회발표] ▽▽▽▽▽('00년, ▽▽학회)
부연구소장 (상무)	◇◇◇	임상시험 총괄	○○대학교 ○○학 박사('00) ○○연구소 ○○연구원 ('00~'00) ○○제약 ○○팀 이사 ('00~'00)	[논문] ▽▽▽▽▽('00년, ▽▽학술지) [학회발표] ▽▽▽▽▽('00년, ▽▽학회)
이사	◇◇◇	프로젝트 매니저	○○대학교 ○○학 석사('00) ○○연구소 ○○연구원 ('00~'00)	[논문] ▽▽▽▽▽('00년, ▽▽학술지)

*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지 발표, 학술대회 주제 발표 등의 내역을 기재

다. 연구개발비용

※ 연결기업인 경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모두 기재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재례 ①] 정부보조금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금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작성

< 연구개발비용 현황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단위: 천원, %)

구분	제00기	제00기	제00기	비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 ¹⁾	원재료비	000	000	
	인건비	000	000	
	감가상각비	000	000	
	위탁용역비	000	000	
	기타	000	000	
	연구개발비용 합계	0,000	0,000	0,000
회계처리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000	000	
	제조경비	000	000	
	개발비(무형자산)	000	000	
	회계처리금액 계	0,000	0,000	0,000
	정부보조금 ²⁾	00	00	00
	연구개발비용 합계 ³⁾	0,000	0,000	0,000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합계÷당기매출액×100]	0.00	0.00	0.00	

1) 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종류가 적어 비용의 성격별 분류금액을 공시할 경우 해당 신약의 원가노출 등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음

2) 비용 또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한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금액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한 보조금 금액은 제외)

3) '회계처리금액 계' + '정부보조금' (→ '비용의 성격별 분류'란의 '연구개발비용 합계'와 동일 금액)

< 연구개발비용 현황 (별도재무제표 기준) >

(단위: 천원, %)

구분	제00기	제00기	제00기	비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 ¹⁾	원재료비	000	000	
	인건비	000	000	
	감가상각비	000	000	
	위탁용역비	000	000	
	기타	000	000	
	연구개발비용 합계	0,000	0,000	0,000
회계처리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000	000	
	제조경비	000	000	
	개발비(무형자산)	000	000	
	회계처리금액 계	0,000	0,000	0,000
	정부보조금 ²⁾	00	00	00
	연구개발비용 합계 ³⁾	0,000	0,000	0,000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합계÷당기매출액×100]	0.00	0.00	0.00	

[기재례 ②] 정부보조금을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 합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작성

< 연구개발비용 현황 (연결/별도 재무제표 기준) >

(단위: 천원, %)

구분	제00기	제00기	제00기	비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	원재료비	000	000	
	인건비	000	000	
	감가상각비	000	000	
	위탁용역비	000	000	
	기타	000	000	
	연구개발비용 합계	0,000	0,000	0,000
	(정부보조금)	(-) 000	(-) 000	(-) 000
	보조금 차감 후 금액	0,000	0,000	0,000
회계처리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000	000	
	제조경비	000	000	
	개발비(무형자산)	000	000	
	회계처리금액 계	0,000	0,000	0,000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합계÷당기매출액×100]	0.00	0.00	0.00	

라.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구분	품목	적용증	연구 시작일	현재 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	신약	○○○	◇◇◇	0000년 임상 3상 (한국) 임상 2상 (EU)	0000년 0000년	라이센스아웃
		○○○	◇◇◇	0000년 전임상	-	
	바이오 시밀러	○○○	◇◇◇	0000년 임상 1상 (한국) 임상 1상 (미국)	0000년 0000년	공동개발
		○○○	◇◇◇	0000년 임상 3상 (EU)	0000년	
화학 합성	신약	○○○	◇◇◇	0000년 임상 2상 (한국) 임상 2상 (미국)	0000년	라이센스인*
		○○○	◇◇◇	0000년 신약후보물질	-	
	개량신약	○○○	◇◇◇	0000년 임상 3상 (한국)	0000년	정부보조금

* 라이센스인 계약을 체결한 신약, (해외)종속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약 등도 포함하여 기재

※ 상기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에 기재된 각각의 품목별로 상세내용을 기재

(가) 품목 : ○○○

① 구분	바이오 신약
② 적용증	※ 해당 의약품에 의해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등을 기재
③ 작용기전	※ 약물이 체내에서 효능을 발휘하는 생화학 반응 과정 등을 간략히 설명
④ 제품 특성	※ 적용증, 작용기전 외의 기타 특성을 기재(예. 기준 제품과의 차이점, 기반 기술 등)
⑤ 진행경과	※ 그간의 임상진행 경과 등을 기재(단계별 임상시험 승인일 및 임상 시작일, 진행 국가, 임상시험 신청 상태인 경우 신청일 정부의 보완요구 또는 반려 사실 등) [라이센스아웃(기술이전) 또는 라이센스인(기술도입)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상대회사의 임상진행 경과 등을 함께 기재(상대 회사명, 국가 등 포함)]
⑥ 향후계획	※ 상위 임상 단계 신청 일정 향후 연구개발 계획, 제품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⑦ 경쟁제품	※ 적용증, 작용기전 등이 유사한 경쟁제품의 개발회사 및 현재 진행단계 등을 기재 [타사에서 유사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신약후보물질, 전임상 등) 경쟁제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
⑧ 관련논문 등	※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논문(학술지명 포함), 학회발표(학회명 포함) 사례 등을 기재 [논문제재, 학회발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
⑨ 시장규모	※ 해당 의약품이 목표로 하는 시장의 예상 규모 및 추정기관(출처) 등을 기재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 목표 시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
⑩ 기타사항	※ 기타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예. 정부보조금, 공동개발 등)

(나) 품목 : ○○○

...

(다) 품목 : ○○○

① 구분	바이오시밀러
② 적용증	
③ 작용기전	
④ 제품의 특성	
⑤ 진행경과	
⑥ 향후계획	
⑦ 경쟁제품	
⑧ 관련논문 등	
⑨ 시장규모	
⑩ 공동개발	□□□와 ○○○ 공동연구계약(기술제휴계약, 기술협약 등)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라) 품목 : ○○○

...

(마) 품목 : ○○○

...

(바) 품목 : ○○○

...

(사) 품목 : ○○○

① 구분	화학합성 개량신약
② 적용증	
③ 작용기전	
④ 제품의 특성	
⑤ 진행경과	
⑥ 향후계획	
⑦ 경쟁제품	
⑧ 관련논문 등	
⑨ 시장규모	
⑩ 정부보조금	○○○ 개발과 관련하여 □□□의 △△△ 과제로 선정되어 000원을 지원받음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완료 실적 >

구분		품목	적응증	개발 완료일*	현재 현황	비고
바이오	신약	○○○	◇◇◇	0000년	한국, EU 판매중	□□에 라이센스아웃
		○○○	◇◇◇	0000년	한국 판매중	
	바이오 시밀러	○○○	◇◇◇	0000년	한국, 미국, EU 판매중	□□와 유통계약
		○○○	◇◇◇	0000년	한국, 미국 판매중	□□와 유통계약
화학 합성	신약	○○○	◇◇◇	0000년	라이센스아웃 후 종료	□□에 라이센스아웃
		○○○	◇◇◇	0000년	한국, EU 판매중	□□에 라이센스아웃
	개량 신약	○○○	◇◇◇	0000년	판매 중단(0000년)	
		○○○	◇◇◇	0000년	한국, 미국, EU 판매중	□□에 라이센스아웃
	제네릭	○○○	◇◇◇	0000년	한국 판매중	
		○○○	◇◇◇	0000년	한국 판매중	

* 정부 판매승인일 등을 기재

※ 개별 설명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3)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구개발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연구개발활동 중단 현황 >

구분		품목	적응증	연구 시작일	현재 진행단계		연구 중단일	중단 사유	재개 계획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	신약	○○○	◇◇◇	0000년	임상 3상 (한국) 임상 2상 (EU)	0000년 0000년	'00.0.0.		
		○○○	◇◇◇	0000년	전임상	-	'00.0.0.		
	바이오 시밀러	○○○	◇◇◇	0000년	임상 1상 (한국) 임상 1상 (미국)	0000년 0000년	'00.0.0.		
		○○○	◇◇◇	0000년	임상 3상 (EU)	0000년	'00.0.0.		
화학 합성	신약	○○○	◇◇◇	0000년	임상 2상 (한국) 임상 2상 (미국)	0000년	'00.0.0.		
		○○○	◇◇◇	0000년	신약후보물질	-	'00.0.0.		
	개량신약	○○○	◇◇◇	0000년	임상 3상 (한국)	0000년	'00.0.0.		

* 라이센스인 계약을 체결한 신약, (해외)종속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약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판매 중단 품목 현황 >

구분		품목	적응증	판매승인일	판매중단일	판매 중단 사유
바이오	신약	○○○	◇◇◇	0000.00.	0000.00.	
		○○○	◇◇◇	0000.00.	0000.00.	
	바이오 시밀러	○○○	◇◇◇	0000.00.	0000.00.	
		○○○	◇◇◇	0000.00.	0000.00.	
화학 합성	신약	○○○	◇◇◇	0000.00.	0000.00.	
		○○○	◇◇◇	0000.00.	0000.00.	
	개량 신약	○○○	◇◇◇	0000.00.	0000.00.	
		○○○	◇◇◇	0000.00.	0000.00.	
	제네릭	○○○	◇◇◇	0000.00.	0000.00.	
		○○○	◇◇◇	0000.00.	0000.00.	

(4) 기타 연구개발 실적

※ 추가로 기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
(예 : 정부출연과제 수행 실적 등)

3 메타버스 사업(2022.11월 최초 배포)

모범사례 관련 유의사항

- (목적) 모범사례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의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 (대상) 공시대상기간 중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 기업
 - 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회사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언론보도 및 인터뷰, 공시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추진사실이 공개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 해당함을 유의(기업공시 작성기준 §4-2-12⑦)
 - 작성대상 이외의 기업의 경우도 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모범사례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12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7항에 대한 내용 중 작성대상 기업이 특히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위주로 마련한 것임
 - 또한,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기재범위 및 기재내용은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목차 및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II. 사업의 개요	
7. 기타 참고사항	
가. 신규 사업의 내용	
(1) 개요	사업의 내용 전반에 관한 핵심내용 요약(표)
(2) 주요 내용	
가) 사업 개요	추진배경, 개발목적 및 활용용도 등
나) 서비스 내용 및 특징	주요 서비스 내용 및 타 플랫폼 대비 강·단점
다) 수익 구조	플랫폼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방법 및 내용
(3) 영업 현황	
가) 가입자/이용자 수	누적 가입자 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등
나) 콘텐츠 종류 및 개수	제작 주체(자체, 타사공급 등)별 콘텐츠 현황
다) 매출액	수익창출 방법별 매출액 현황
(4) 개발 진행 현황	전체 개발 진행단계 및 경과
(5) 타사와의 업무협력 내용	타사와의 공동개발 시 회사별 담당업무 및 내용
(6) 기타 투자자 참고사항	플랫폼 내 경제시스템, 주요 개선 예정사항 등

II. 사업의 개요

7. 기타 참고사항

※ 본문 내 사용된 전문용어 등에 대해 별도의 표를 이용하여 적절한 용어 정의를 기재하고, 대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용어 정의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기재

[용어의 정의]

용어	설명
메타버스 (Metaverse)	가상·초월을 뜻하는 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
...	...

출처) ○○○

가. 신규사업의 내용

(1) 개요

※ 아래 표 양식을 활용하여 사업의 핵심 내용을 요약 기재
(다수의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일 경우 각각의 플랫폼별로 기재)

① 플랫폼 명	□□□ (※ 미확정시 프로젝트 명을 기재)
② 출시(예정)일	0000. 00. 00. (예정)
③ 사용환경	모바일, PC 등 (※ 플랫폼 접속 및 이용 가능 환경을 기재)
④ 서비스 내용	<p>1) OOO : 최대 0명의 이용자가 동시 접속 가능한 세미나, 강연 공간 제공 2) △△△ : ... 3) ◇◇◇ : ...</p> <p>※ 소셜네트워크, 게임, 공연, 교육, 세미나(강연, 회의) 등 가입자가 플랫폼 내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요약 기재</p>
⑤ 주요특징	※ 타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차별화 요소, 경쟁 상의 강점·단점을 기재
⑥ 수익구조	<p>1) 제휴 광고 : 외부 기업 광고 유치를 통한 수수료 수취 2) ... 3) ...</p> <p>※ 플랫폼 운영을 통한 회사의 수익창출 방식을 기재</p>
⑦ 개발 진행현황	베타 버전 개발 완료(0000.00.00.)
⑧ 기타사항	※ 기타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 (예: 플랫폼 내 경제시스템 주요 개선 예정사항, 타사와의 업무 협력내용 등)

(2) 주요 내용

가) 사업 개요

※ 사업추진 배경, 플랫폼 개발목적 및 활용용도, 사용환경(모바일, PC 등), 출시 예정 시기 등의 내용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

나) 서비스 내용 및 특징

※ 소셜네트워크, 게임, 공연, 교육, 세미나(강연, 회의) 등 가입자가 플랫폼 내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와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고, 타사 경쟁 플랫폼 대비 차별화 요소, 경쟁상의 강점·단점을 기재

당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OOO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1) OOO 2) △△△ 3) ◇◇◇으로 구성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서비스 현황>

구분	설명	도입 시기
OOO	이용자 누구나 세미나를 위한 공간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에 최대 X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	XX.XX.XX
△△△	...	YY.YY.YY
◇◇◇	...	XX.X분기(예정)

당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XXX와 같은 타사 경쟁 플랫폼과 비교하여 크게 ○가지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째는...

다) 수익구조

※ 회사의 플랫폼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 및 이에 대한 설명, 향후 도입 예정인 수익 창출 방법 등을 기재하며, 필요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 가능

당사는 동 플랫폼 운영을 통해 1) 외부 기업 광고 유치를 통한 광고료, 2) 상품, 콘텐츠 등 공급자와 이용자간 거래 중개를 통한 중개 수수료 3) 회사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 및 각종 아이템(의류, 제스처 등)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

향후 '2X년 X분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메타버스 내 신규 아이템 독점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익구조를 더욱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 수익구조 현황 >

수익구조	설명	도입시기
광고료	메타버스 공간 내 마련된 특정 장소에 다양한 기업의 광고를 유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을 수취	XX.XX.XX
증개 수수료	...	YY.YY.YY
콘텐츠 / 아이템 판매	...	ZZ.ZZ.ZZ
정기 구독료	...	XX.X분기(예정)

(3) 영업 현황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영업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생략 가능

가) 가입자/이용자 수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기준 가입자/이용자 수 현황을 기재하되, 회사간 공시내용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누적 가입자 수', '월간 활동 이용자 수(MAU)', '일간 활동 이용자 수(DAU)'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해당 지표의 뜻과 산출 방법을 함께 기재.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전세계 XXX명의 누적 가입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간 활동 이용자 수(MAU)는 XXX 명, 일간 활동 이용자 수(DAU)는 XXX명 입니다. 지난 3년간 가입자 및 이용자 수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MAU(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동 이용자 수) : 한 달 동안 해당 플랫폼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수를 의미하며, 이용자 한 명이 해당 기간 중 플랫폼에 여러 번 접속하였더라도 한 명으로 집계하여 산출

당기말 일간 활동 이용자(DAU) 수는 전기말 대비 약 XX%, 큰 폭으로 증가한 XXX명을 기록하였으며, 동 사유는 ...

< 가입자 / 이용자 수 현황 >

(단위 : 명)

구분	X3.1분기	X2	X1
누적 가입자	○○○	○○○	○○○
이용자	월간 활동 이용자(MAU)	○○○	○○○
	일간 활동 이용자(DAU)	○○○	○○○
	...		

나) 콘텐츠 종류 및 개수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제공한 콘텐츠 종류 및 개수를 콘텐츠 제작 주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콘텐츠 제작 주체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가능

* 회사 자체 제작, 타사(외부 콘텐츠 제작 업체 등) 공급, 이용자 직접 생산 등

< 콘텐츠 제공 현황 >

(단위 : 건)

구분		X3.1분기	X2	X1
당사 자체 제작	게임	△△△	△△△	△△△
	아바타 / 게임용 아이템	△△△	△△△	△△△
	○○○	△△△	△△△	△△△
타사공급	공연 및 뮤직비디오	△△△	△△△	△△△
	강연 및 세미나	△△△	△△△	△△△
	○○○	△△△	△△△	△△△
이용자 직접 생산	게임	△△△	△△△	△△△
	아바타/게임용 아이템	△△△	△△△	△△△
	○○○	△△△	△△△	△△△
합계		□□□	□□□	□□□

※ '가) 가입자/이용자수', '나) 콘텐츠 종류 및 개수' 이외에도 회사의 플랫폼 운영 현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기재 가능(예시 : 유료 구독자 수, 1인당 평균 접속 시간, 1인당 평균 결제액 등)

다) 매출액

※ 공시대상기간 중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상기 '(2) 주요내용 – 다) 수익구조'에 기재된 수익 창출 방법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 창출 방법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 기재하거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가능

< 매출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X3.1분기		X2		X1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광고료	○○○	00.0	○○○	00.0	○○○	00.0
증개 수수료	○○○	00.0	○○○	00.0	○○○	00.0
콘텐츠 / 아이템 판매	○○○	00.0	○○○	00.0	○○○	00.0
...	○○○	00.0	○○○	00.0	○○○	00.0
합계	○○○	100.0	○○○	100.0	○○○	100.0

(4) 개발 진행 현황

※ 플랫폼 개발 진행현황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개발 단계(개요)를 간략히 기재한 후, 현재 개발상태, 단계별 완료 예상 시기 및 개발내용 등을 기재. 다만, 진행 단계별 구분 기준 및 용어 등은 회사 내부 개발 절차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당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전체 개발 단계는 기획/설계 -> 개발 -> OOO 순으로 이루어지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개발 진행 단계는 OOO이며, 향후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개발 진행단계 >

순서	진행 단계	시기	설명
1	기획 / 설계	X2년 2분기	
2	프로토타입	X2년 4분기	
3	알파버전	XX년 X분기(예정)	
4	베타버전	XX년 X분기(예정)	
5	출시	XX년 X분기(예정)	

다만, 상기 완료 예상시기 등은 향후 개발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타사와의 업무 협력내용

※ 플랫폼 개발을 타사와 공동개발 방식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 회사 개요(회사명, 주된 사업의 내용, 상장여부 등), 각 회사별 역할 및 내용 등을 기재하며, 자체 개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생략 가능

당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XX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와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사별 담당 업무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사업 역할	내용
A	프로젝트 총괄	
	플랫폼 개발	
	...	
B	광고·홍보	
	...	

(6) 기타 투자자 참고사항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예: 플랫폼 내 경제시스템 개요, 플랫폼 운영 등과 관련하여 향후 예정된 주요 개선사항 등)